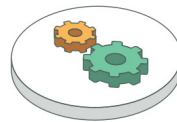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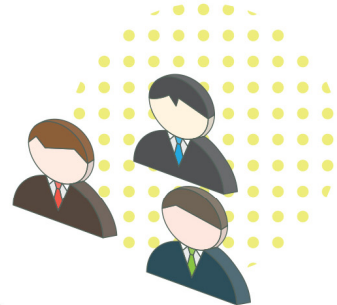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에 처음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패 방지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수준과 청렴·반부패 관련 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금품 수수 등 전형적인 부패행위에서 나아가 부정청탁, 직권남용 등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다양해졌고, 국민들은 직권남용과 갑질행위, 소극행정,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부패로 인식해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수준은 그만큼 높아졌다. 이와 함께,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관련 법령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한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고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2021년에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2022년은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 체제가 실시되는 첫 해로, 각급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평가제도와 올해 평가의 기본 방향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에서는 그동안의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개요와 연혁, 2021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세부 내용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의 주요 방향이 담겨있다. 2022년 평가체계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2개의 측정·평가 제도를 통합·재편한 형태로, 기존의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가 2022년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평가 세부내용의 상당 부분은 2022년 상반기 중에 수립되는 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확정되므로 이 안내서에서는 2021년에 발표된 평가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평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평가의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 제1장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요	1
1. 청렴수준 평가의 목적과 배경	3
2.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특징	5
3.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운영 연혁	6
▶ 제2장 청렴수준 평가제도 방법 및 절차	19
I.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2021년도 기준)	21
1. 청렴도 측정의 개념	21
2. 청렴도 측정의 내용	23
3. 청렴도 측정 방식	31
4. 청렴도 측정 자료	40
5. 점수 산정 방식	43
6. 청렴도 측정 절차	54
II. 부패방지 시책평가(2021년도 기준)	59
1.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개요 및 평가 체계	59
2.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절차	60
3. 기관별 평가 결과 산정	64
4. 결과 발표 및 활용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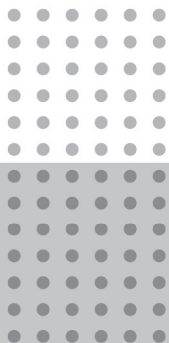
▶ 제3장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65

1.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의 목적과 배경 67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70
3.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78
4.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절차 80
5.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활용 85

부록1 2022년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87

- 붙임 1. 자체청렴도 실시 계획 제출 서식 93
- 붙임 2. 자체청렴도 측정 추진 절차 94

부록2 자주 묻는 질문 95



제1장 •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안내서



제1장 |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요

1. 청렴수준 평가의 목적과 배경

▣ 청렴수준 평가의 목적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패가 발생하는 분야와 그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패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에 의존하는 사후 통제방법에서 나아가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는 예방적인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최근 제정·시행된 반부패 관련 법령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반부패 정책 방향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 등을 정확히 측정·진단해 예방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급 기관이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별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는 청렴도 측정을 통해 측정·진단하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촉진·지원하는 평가체계가 그것이다. 또, 매년 측정·평가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고, 홍보·확산해 각급 기관의 청렴도 향상 활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청렴도 향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을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국가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청렴수준 평가의 배경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전에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패인식 조사,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등 다양한 부패진단 체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부패진단 체계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하여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청렴수준 평가제도 도입 이전의 부패진단체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같은 조사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부패수준에 대한 심리적 잣대의 차이로 인해 개인별로 측정 수준이 다르게 조사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경험과 무관한 느낌만으로 평가를 할 개연성이 존재했다. 이러한 인식조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이전 진단체계에서 조사 단위는 정치분야, 사법분야, 행정분야 등 거시적인 분야로, 부패수준이 높다고 진단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는 구체적인 부패발생 현상,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할 수 없었다. 이에 조사의 반부패 정책의 환류기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1999년 당시 ‘반부패특별위원회’는 기존의 부패진단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부패진단 시스템으로 ‘청렴도 측정’을 개발하였다. 정부(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 이후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함께 운영해 2021년도에는 20번째 측정·평가를 실시했다. 또, 지난 20년간의 변화된 환경과 공직사회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를 평가체계에 반영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그동안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평가체계를 통합해 2022년부터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2.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특징

청렴수준 평가는 기존의 부패진단체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정확하게 부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청렴수준 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측정·평가 대상단위가 ‘개별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정치, 사법, 행정 분야 등 거시적 정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부패진단과는 달리 청렴도 측정은 개별 공공기관의 주요한 대민·대기관 업무, 기관의 조직문화와 내부 업무 등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부패수준이 심각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제도개선 등 자체적인 부패방지 노력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측정·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측정·평가 대상과 방식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청렴도 측정의 경우 조사 참여 대상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공공기관 내부 직원으로 구체화된다. 과거 부패진단은 일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인식조사는 사회 전반적인 부패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인식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에는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청렴도 측정은 변화된 조사대상단위에 맞게 해당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기관의 소속 직원 등으로 평가자를 한정하고,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 중에 체험한 부패경험도 함께 측정한다. 또, 객관적인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까지 반영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지표를 매년 반부패 정책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해 구성하고, 국민 권익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지표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평가 결과를 산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청렴수준 평가제도 운영 연혁

▣ 외부청렴도 측정모형 개발(1999년)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방지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1999년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반부패특별위원회’는 설립된 해인 1999년에 기존의 부패진단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부패진단 시스템으로 ‘청렴도 측정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때 개발된 모형은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대기관 업무인 경우는 공직자)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진단하는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모형으로, 부패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체감 청렴도”와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잠재 청렴도”로 구성되었다.

▣ 청렴수준 측정·평가 최초 실시(2002년)

1999년 개발된 청렴도 측정 체계는 2000년 8월과 12월, 2001년 등 세 차례에 걸친 시험측정을 통해 운영체계를 확정하였고,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측정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참여의 정도를 진단하고 앞으로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이행실태를 공통 과제와 자율과제로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도입하였다.

▣ 청렴수준 측정·평가 체계·모형의 변화(2003년~2021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 이후 측정·평가를 위한 항목과 지표 등 측정·평가 모형은 변화하는 부패유형과 반부패 정책 중점 방향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왔다.

1) 청렴도 측정 체계·모형의 변화 연혁

가. 측정모형(설문조사) 구성의 변화

외부 고객의 입장에서 체감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한다는 의미에서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측정으로 시작했던 청렴도 측정은 외부 민원업무에 대한 측정만으로는 공공부문 청렴도 측정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2006년에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모형을 개발하였고, 2007년도부터 외부(대민·대기관)청렴도 측정과 함께 내부청렴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협의의 부패측면뿐 아니라 업무의 투명성과 공직자의 책임성 측면까지 청렴도 측정대상에 포함하였고, 부패개념을 금품·향응제공에서 편의 제공까지 확대하였으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종합한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보다 적합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편차가 큰 부패경험항목 점수에 의해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패경험 항목 관련 점수산출방식을 표준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내·외부청렴도의 종합청렴도 반영 비율을 조정하여 청렴도 조사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2년에는 기존의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외에 전문가, 정책관련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정책고객평가를 정식지표로 도입(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금융공공기관 대상)하였다. 다만, 2020년에 정책고객평가(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정원 1,000명 이상 공직유관단체 대상) 결과를 종합 청렴도에 반영하지 않고,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반영하는 체계로 모형을 재정비했는데, 이는 정책고객평가 조사대상인 전문가, 정책관련자가 기관의 정책결정과정 등 전반을 경험·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민의 직접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기존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종합청렴도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측정항목을 추가해 심화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급 기관의 반부패 추진 기초자료를 지속 제공하였다.

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 범정부 차원의 갑질 대책 및 적극행정 정책 추진에 발맞춰 부정청탁(2016년), 갑질행위(2018년), 적극행정(2020년), 공직자의 이해충돌(2021년) 관련 항목을 설문항목에 새롭게 반영하는 등 새로운 환경 변화도 측정항목에 적극 반영하였다.

나.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의 도입·정비

2011년에는 그간 설문조사로만 이루어졌던 청렴도 측정결과에 공공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 반영함으로써 청렴도 측정 결과가 기관의 청렴수준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행정기관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들의 징계자료를 토대로 직위와 부패금액 등을 점수화 한 후, 청렴도에서 감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또, 2011년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의 적용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까지 확대하였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과 행정기관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부패사건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여 부패사실에 대한 기관 확인을 거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점수화 하여 청렴도에 감점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대상 부패 범위를 확대하고, 부패 발생·적발시점과 평가 반영시점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소가 완료된 정무직 사건, 부패금액이 크거나 다수가 연루 된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징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감점 반영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자료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도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자료를 포함하였고, 2015년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 관련 징계 자료도 확인하여 반영하였다.

2014년에는 모형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에 반영되는 부패사건을 양태에 따라 외부, 내부로 구분하여 각각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에 반영하였다. 2019년에는 부패사건 발생현황이 현실에 보다 부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패사건의 발생시점에 따라 차등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기존 정성평가로만 반영된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에 정량평가를 도입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021년에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감점 반영 방식을 통일해 감점 대상이 되는 전체 사건을 1차로 산식에 따라 정량평가 하고, 주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외부기관 적발비율이 높은 기관 등은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정량평가 결과에서 가중·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사건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한편, 반부패 관련 법령 제정과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과 범위도 지속 확대해 왔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2016년에는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반영 대상에 부정청탁을 포함하였고, 소극행정(2019년), 고위직의 직무관련 성 비위(2021년) 사건 등도 감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다. 결과 발표 방식의 변화

2002년 청렴도 측정 결과는 기관 유형별 3등급제를 적용해 발표했고, 그 이후 2007년까지는 기관별 점수만 발표하거나 점수와 함께 점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등급적 요소를 참고로 발표하는 방식이 혼재되었다. 2008년에는 기관 유형별로 종합청렴도와 외부·내부 청렴도를 4등급제 방식으로 점수와 등급을 발표했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같은 방식을 유지하되, 기관 유형별 등급은 5등급제 방식을 적용했다. 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발표되어 순위 위주의 보도 양산, 기관 간 지나친 경쟁 유발로 인한 우수사례 공유 저해 등 여러 부작용이 지적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기관별 등급 결과만 발표(기관 유형별 5등급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결과는 기관에 별도로 제공하여 기관의 자율적 청렴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주요 성과

‘청렴도 측정’ 제도는 국제적으로 측정모형의 과학성 등을 인정받아 2012년 UN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함



2)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의 변화 연혁

가.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 배경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부패예방 노력 과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하여 2021년까지 매년 실시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의 틀 안에서 청렴 노력도로 개편되어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2002년도는 공통과제와 자율과제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하였고, 2004년도는 청렴도 평가결과, 실질적으로 부패가 감지되는 영역과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최근 10년간 평가체계 및 지표 주요 변화

2012년도는 '반부패 경쟁력평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평가 대상기관을 294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유형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도는 기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반부패 추진체계의 운영성과를 측정함과 동시에 산하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반부패·청렴을 공공기관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평가요소로 포함하였다.

2014년도에는 법령에 규정한 표현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명칭을 다시 변경하고 부패공직자 처벌수준 정상화, 기관 특성별 부패취약분야 개선, 고위직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한 국가 전반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다수 포함하였다.

2015년도에는 평가 대상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유형을 포함하였다.

2016년도에는 기존 모형을 대폭 개선하여, 시책평가를 통해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의 성과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년 평가모형은 기존의 ‘반부패의지·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시책 추진협조 평가영역’ 체계를 개편하여 ‘계획, 실행, 성과·확산’으로 구성, 평가 대상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90% 이상 도달된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하여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86개 지표에서 41개 지표로 축소)

2017년도는 전년도에 개선된 모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일부 지표를 개선하였다. 청탁금지 제도운영, 청렴교육 의무화 등 청렴정책 중점 사항을 새롭게 반영하고,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확대하였다. 지표의 큰 틀은 유지하여 기관이 이행할 지표는 41개에서 39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2018년도에는 평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지표수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3개 부문, 6개 영역, 40개 지표)하면서,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 등 반부패·청렴 중점 추진분야를 새롭게 평가에 반영하였다. 특히,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수립과 취약분야 제도개선 실적, 우수시책 개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대상기관은 총 270개 기관으로, 청렴도 하위기관과 채용비리 발생기관을 추가하였다.

2019년에도 계획, 실행, 성과, 확산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였다. 또한 기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시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실상 이행이 완료된 지표는 폐지하고, 유사 성격의 지표는 통합하는 등 평가지표를 조정하였다.(4개 부문, 5개 영역, 2019년 30개 지표로 대폭 축소)

2020년에는 실적(input)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outcome)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과 관련한 정성지표를 보완하였다.

2021년에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지표의 평가비중을 강화하였고,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표도 포함시켰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인구 4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수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분야의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 노력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도록 유도하였다.

〈 청렴수준 평가제도 주요 연혁 〉

연 도	운영 경과
1999~2001년	◆ 외부 전문가 용역으로 청렴도 측정모형 개발(1999년) ◆ 30개 기관, 10,240명 대상 시험측정(2000~2001년, 총 3회)
2002년	◆ (청렴도) 외부청렴도 71개 기관, 348개 업무, 30,639명 조사 - 전화조사 : 1차(7.2~8.17), 2차(9.25~11.23), 결과 기관통보 : 2003.4.8 ◆ (시책평가) 74개 기관, 결과 발표 : 2003.1. - 평가체계: 공통 및 자율과제 평가 ※ 공통과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구축 및 운영, 각종 계약업무의 투명성강화 등 8개 분야 ※ 자율과제: 행정개혁, 부패방지기본계획상의 과제 등 3개 분야
2003년	◆ (청렴도) 외부청렴도 77개 기관, 394개 업무, 36,458명 조사 - 전화조사 : 9.22~12.29, 결과 발표 : 2004.1.19 ※ 232개 기초자치단체 : 시험측정 후 2004년부터 본격 실시 ◆ (시책평가) 87개 기관, 결과 발표 : 2004.1. - 평가체계 : 공통 및 자율과제 평가 ※ 공통과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시행, 비리공직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등 8개 분야 ※ 자율과제: 부방위 제도개선 권고 과제, 기관별 취약분야 개선과제 등 3개 분야
2004년	◆ (청렴도) 외부청렴도 313개 기관, 1,324개 업무, 75,317명 조사 - 전화조사 : 10.4~11.30, 결과 발표 : 2005.1.4 ◆ (시책평가) 87개 기관, 결과 발표 : 2005.1. - 평가체계 : 청렴도 중점개선, 공통, 제도개선 권고, 자율 4개 과제 31개 지표 평가

연 도	운영 경과
2005년	◆(청렴도) 외부청렴도 325개 기관, 1,330개 업무, 86,892명 조사 - 전화조사 : 8.25~10.27, 결과 발표 : 2005.12.9 ◆(시책평가) 94개 기관, 결과 발표 : 2006.3. - 평가체계 : 부패방지 체계,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 성과 3개 부문 5개 과제 평가 ※ 부패방지 체계: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 부패방지 노력: 제도개선 종합대책,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 부패방지 성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06년	◆(청렴도) 304개 기관, 1,369개 업무, 89,941명 조사 - 전화조사 : 8.28~11.3, 결과 발표 : 2006.12.18 ※ 내부청렴도 시험 측정(93개 기관, 3개 분야) ◆(시책평가) 96개 기관, 결과 발표 : 2007.2. - 평가체계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 7개 과제 72개 지표 평가
2007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2008.1.16 - 외부청렴도 333개 기관, 1,347개 업무, 90,272명 조사, 전화조사 (10.1~11.29) - 내부청렴도 : 138개 기관, 13,160명 조사, 온라인조사(11.15~12.15) ◆(시책평가) 96개 기관, 결과 발표 : 2008.2. - 평가체계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기관장 노력도, 제도개선 종합대책 등 8개 과제 63개 지표 평가
2008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2008.12.18. (종합청렴도 167개 기관) - 외부청렴도 377개 기관, 1,329개 업무, 98,076명 조사, 전화조사 (9.25~11.22) - 내부청렴도 171개 기관, 13,502명 조사, 온라인조사(10.17~11.21) ◆(시책평가) 85개 기관, 결과 발표 : 2009.2. - 평가체계 :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 수범사례 4개 부문 평가 ※ 공통시책: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등 6개 과제 평가 ※ 자율시책: 반부패 시책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
2009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 2009.12.9. (종합청렴도 160개 기관) - 외부청렴도 474개 기관, 1,573개 업무, 105,517명 조사, 전화조사 (9.1~11.15) - 내부청렴도 164개 기관, 13,840명 조사, 온라인조사(9.1~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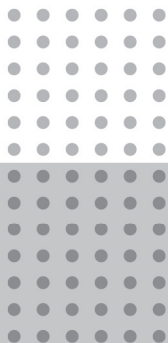
연 도	운영 경과
	◆(시책평가) 104개 기관, 결과 발표 : 2010.1. - 평가체계 :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 3개 부문 평가 ※ 공통시책: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등 6개 과제 평가 ※ 자율시책: 반부패 수범사례 등 2개 과제 평가
2010년	◆(청렴도) 706개 기관, 결과 발표 : 2010.12.9. - 외부청렴도 : 2,395개 업무, 150,454명 조사, 전화조사(8.31~11.23) - 내부청렴도 : 76,401명 조사, 온라인조사(8.31~11.23) ◆(시책평가) 193개 기관, 결과 발표 : 2010.12.9. - 평가체계 :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 3개 부문 평가 ※ 공통시책: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등 6개 과제 평가 ※ 자율시책: 반부패 수범사례 등 2개 과제 평가
2011년	◆(청렴도) 676개 기관, 결과 발표 : 2011.10.12.(1차), 12.13(2차) - 외부청렴도 : 2,638개 업무, 145,155명 조사, 전화조사(8.11~11.11) - 내부청렴도 : 65,452명 조사, 온라인조사(8.11~11.11) ※ 정책고객 평가(시범평가) : 53개 기관, 7,517명 조사 ◆(시책평가) 208개 기관, 결과 발표 : 2012.1.10 - 평가체계 : 공통시책, 자율시책, 부패방지 성과 3개 부문 평가 ※ 공통시책: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기관장 노력도 등 6개 과제 평가 ※ 자율시책: 기관별 추진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실정 등 2개 과제 평가
2012년	◆(청렴도) 661개 기관, 결과 발표 : 2012.11.26. - 외부청렴도 : 2,532개 업무, 164,538명 조사(국공립대학 포함), 전화조사(8.1~11.15) - 내부청렴도 : 72,461명 조사(국공립대학 포함), 온라인조사(8.1~11.15) - 정책고객 평가 : 91개 기관, 15,491명 조사 ※ 35개 국공립대학은 별도 발표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94개 기관, 결과 발표 : 2012.12.27. - 평가체계 : 반부패 의지 노력, 부패방지 성과 2개 영역, 7개 부문, 28개 단위과제 평가
2013년	◆(청렴도) 650개 기관, 결과 발표 : 2013.12.19 - 외부청렴도 : 2,628개 업무, 165,191명 조사, 전화조사(8.1~11.15) - 내부청렴도 : 56,284명 조사, 온라인조사(8.1~11.15) - 정책고객 평가 : 103개 기관, 18,507명 조사 ※ 47개 지방의회, 46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으로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25개 기관, 결과 발표 : 2014.1.16. - 평가체계 : 반부패 의지 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시책 추진 협조 3개 영역, 8개 부문, 19개 단위과제 평가

연 도	운영 경과
2014년	◆(청렴도) 640개 기관, 결과 발표 : 2014.12.3. - 외부청렴도 : 2,798개 업무, 176,081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56,701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 정책고객 평가 : 121개 기관, 21,037명 조사 ※ 36개 국공립대학, 45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54개 기관, 결과 발표 : 2015.2.5. - 평가체계 : 반부패 의지 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시책 추진 협조 3개 영역, 7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2015년	◆(청렴도) 615개 기관, 결과 발표 : 2015.12.9. - 외부청렴도 : 2,514개 업무, 166,873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56,988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 정책고객 평가 : 125개 기관, 21,237명 조사 ※ 62개 지방의회, 36개 국공립대학, 45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68개 기관, 결과 발표 : 2016.2.22. - 평가체계 : 반부패 의지 노력, 부패방지 성과, 반부패시책 추진 협조 3개 영역, 7개 부문, 20개 단위과제
2016년	◆(청렴도) 606개 기관, 결과 발표 : 2016.12.7. - 외부청렴도 : 2,441개 업무, 156,738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54,808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 정책고객 평가 : 124개 기관, 20,855명 조사 ※ 46개 지방의회, 36개 국공립대학, 45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66개 기관, 결과 발표 : 2017.1.19. - 평가체계 : 계획(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성과·확산(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확산) 등 4개 부문, 40개 지표 평가
2017년	◆(청렴도) 573개 기관, 결과 발표 : 2017.12.6. - 외부청렴도 : 2,295개 업무, 151,986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63,272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연 도	운영 경과
	- 정책고객 평가 : 132개 기관, 20,394명 조사 ※ 47개 지방의회, 36개 국공립대학, 46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56개 기관, 결과 발표 : 2018.2.13. - 평가체계 : 계획(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성과·확산(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4개 부문, 39개 지표 평가
2018년	◆(청렴도) 610개 기관, 결과 발표 : 2018.12.5. - 외부청렴도 : 2,360개 업무, 152,265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63,731명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8~11월) - 정책고객 평가 : 136개 기관, 20,771명 조사 ※ 47개 국공립대학, 46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70개 기관, 결과 발표 : 2019.1.31. - 평가체계 : 계획(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성과·확산 (청렴개선효과, 반부패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4개 부문, 40개 지표 평가
2019년	◆(청렴도) 609개 기관, 결과 발표 : 2019.12.9. - 외부청렴도 : 2,029개 업무, 158,753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60,904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 정책고객 평가 : 138개 기관, 19,299명 조사 ※ 42개 지방의회, 35개 국공립대학, 46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70개 기관, 결과 발표 : 2020.1.28. - 평가체계 : 계획(반부패 계획 수립),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성과·확산(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등 4개 부문, 30개 지표 평가
2020년	◆(청렴도) 579개 기관, 결과 발표 : 2020.12.9. - 외부청렴도 : 2,051개 업무, 153,141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55,011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 65개 지방의회, 34개 국공립대학, 44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연 도	운영 경과
	◆(시책평가) 263개 기관, 결과 발표 : 2021.1.26. - 평가지표 : 계획(반부패 계획 수립),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성과·확산(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등 4개 부문, 20개 지표 평가
2021년	◆(청렴도) 592개 기관, 결과 발표 : 2021.12.9. - 외부청렴도 : 2,054개 업무, 145,006명 조사, 전화조사(온라인 조사 병행, 8~11월) - 내부청렴도 : 61,300명 조사, 온라인조사(8~11월) ※ 82개 지방의회, 16개 국공립대학, 13개 공공의료기관은 별도 모형에 의해 측정, 별도 발표 ◆(시책평가) 273개 기관, 결과 발표 : 2022.1.18. - 평가지표 : 계획(반부패 계획 수립), 실행(청렴생태계 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성과·확산(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등 4개 부문, 7개 단위과제, 19개 지표 평가

※ 측정·평가 대상기관 규모는 측정·평가 결과를 최종 발표한 기관 수를 기준으로 작성



제2장 •

청렴수준 평가제도 방법 및 절차

- 2021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기준으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안내서



제2장 | 청렴수준 평가제도 방법 및 절차

I.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2021년도 기준)

1. 청렴도 측정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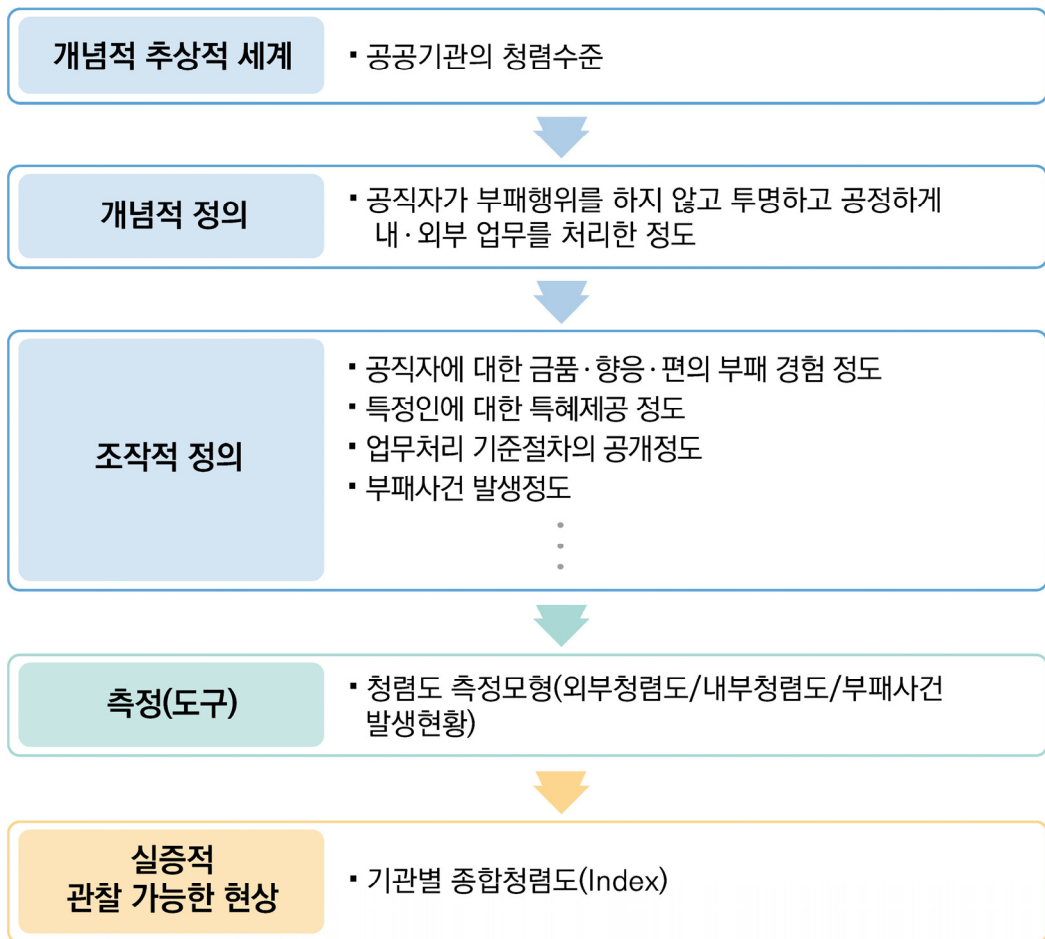
측정이란 측정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attribute)에 대해 체계적(systematically)으로 숫자(number)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속성이 측정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개념(concept) 상태에 있는 것이며, 측정을 거쳐서 값이 부여되면 변수(variable)가 된다. 속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측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태로 바꾸어 실증연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과정인 것이다. 청렴도 측정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실증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속성은 측정을 거치기 이전에는 개념적·추상적인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만으로는 실제 현실 속에서 관찰되거나 측정할 수 없다. 측정을 위해서는 개념적 정의를 실제 현상에서 관찰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하여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라 한다. 즉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실제 관찰 가능한(측정 가능한, 숫자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청렴도의 개념적 정의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만으로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즉,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만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렴도를 “공직자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부패 경험 정도” 등과 같은 세부지표들로 조작화하여 기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청렴도를 이루는 하위 지수에 대해 재 정의하고, 정의된 해당 지수들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 측정 가능한 세부지표들로 구성한다. 이후 각 지표에 따른 항목들을 설문문항화 또는 산식화 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청렴도’라는 개념에 대해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하는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 청렴도 측정에서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



2. 청렴도 측정의 내용

가. 청렴도 측정체계

앞에서 보았듯이 ‘청렴도’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청렴도 측정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행정서비스 고객의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 ‘청렴도’란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내·외부 업무를 처리한 정도’로 정의된다. 따라서, 청렴도란 단순히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수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행위’의 정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및 청탁금지법)

-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③ ①과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의 제정·시행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 유형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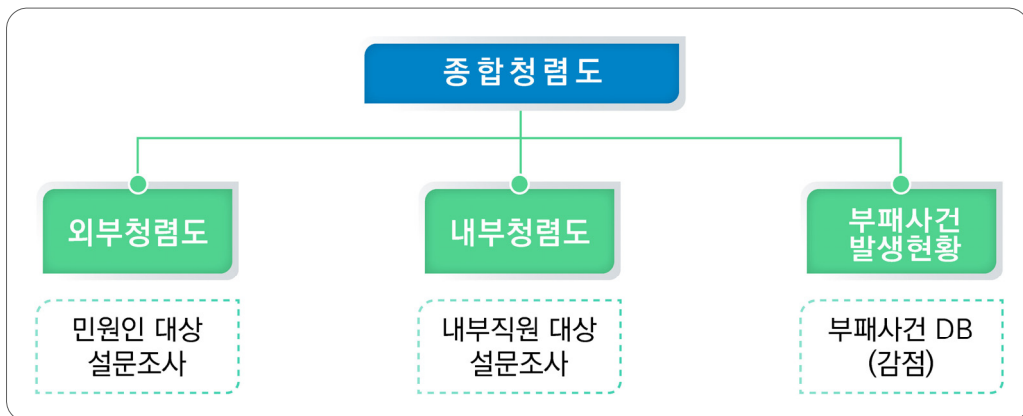
기관별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의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하여 산출한 지표로서 국민,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체감한 청렴도와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한 종합지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범죄건수나 징계건수는 정부의 반부패 통제정도가 반영(적발활동이 활발할수록 범죄·징계건수가 증가)돼 부패행위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부패수준을 측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패수준의 측정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설문조사 방식이 많이 활용되나, 설문조사 결과에 응답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이 또한 완벽한 수단은 아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 결과와 객관적인 부패사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보면 ① 공공기관의 대민·대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고객의 입장에서 경험·인식한 해당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②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소속기관의 조직문화와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③ 실제 발생한 부패사건을 점수화한 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구분되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한편, 조사표본 오염·관리행위 등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 하향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

기관의 수행기능이 일반 공공기관과 차이가 있는 국공립대학교,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은 별도의 모형으로 측정하는데,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는 기본구조는 유사하다.

〈 일반 공공기관(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측정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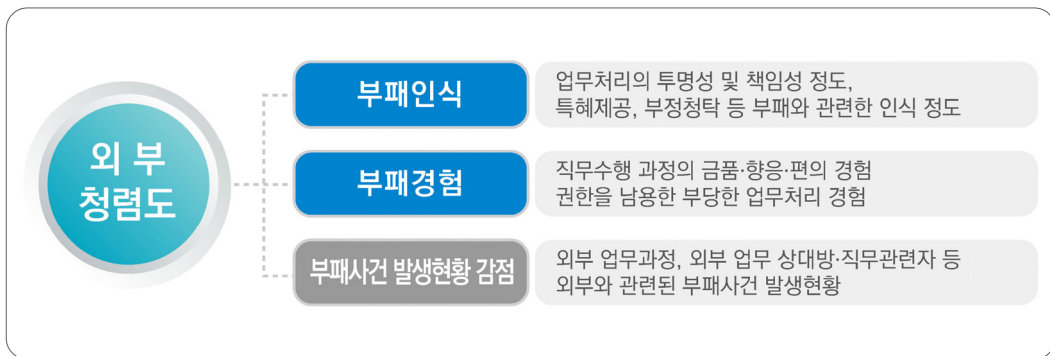
나. 세부 측정 내용

▣ 외부청렴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

‘외부청렴도’는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국민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금품·향응·편의의 요구·수수 등과 같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일반국민이 아닌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을 의미하며, 대민 업무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민원인이, 대기관 업무일 경우에는 상대 공직자가 해당된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된다. ‘부패인식’은 국민이 인식하는 업무 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적극성, 부당한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하며, ‘부패경험’은 국민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공직자의 요구나 수수 등의 부패수준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설문조사 결과로 외부청렴도를 도출하였으나, 2014년부터 외부청렴도의 타당도 제고를 위해 외부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외부청렴도에 반영하였다. 외부 부패사건은 외부 업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등 조직 외부와 관련된 부패사건을 의미한다.

〈 외부청렴도 구성 체계 〉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항목별 중요도(가중치)는 학계, 관련전문가, 평가대상 기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다음 표는 2021년도 외부청렴도 설문항목 및 가중치이다.

〈 외부청렴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가중치(2021년 기준) 〉

※ ()안은 2021년도 가중치(2022년 평가 시 적용항목과 가중치는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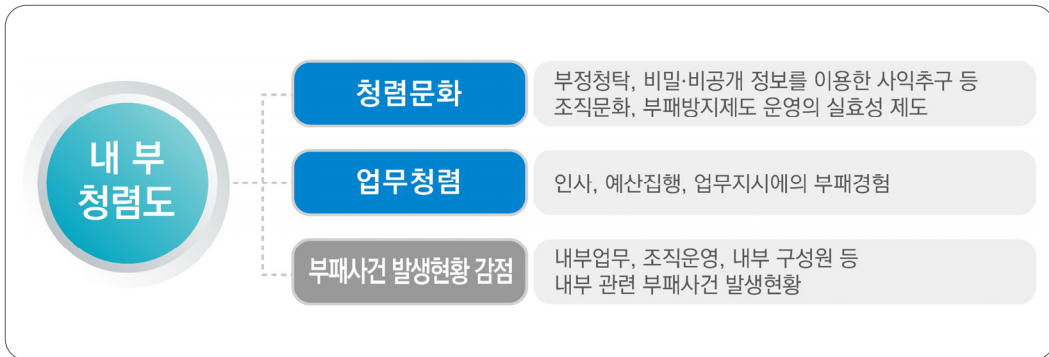
측정부문 (가중치)	세부항목 (가중치)
부패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249)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0.20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업무처리의 투명성·공개성 (0.156)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적극행정) (0.151)
부패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26)
	향응 경험률 (0.113)
	편의 경험률 (0.107)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296)
	금품·향응 경험규모 (0.283)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갑질행위) 경험률 (0.075)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공공기관의 업무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대표적인 대민·대기관 업무, 공직자가 우월적 결정이나 처분을 할 수 있어 권한을 통해 이권을 얻을 수 있는 업무, 계약 등과 같이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지만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 등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이는 부패취약분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이나 예방적 반부패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 내부청렴도의 정의 및 구성요소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내부업무가 부패행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된다. ‘청렴문화’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인식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특혜제공·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수준과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를 의미하며, ‘업무청렴’은 인사업무·예산집행·업무지시 등 내부 업무의 수행에 있어 구성원들이 경험한 부패수준을 의미한다. 외부 청렴도와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내부 부패사건을 점수화하여 내부청렴도에 반영하고 있다. 내부 부패사건은 조직 내 인사 관련 금품·향응 제공, 재직자의 공금횡령 등 조직 내부업무 및 조직운영, 내부구성원 등 조직 내부와 관련된 부패사건을 의미한다.

〈 내부청렴도 구성 체계 〉



내부청렴도의 각 설문항목별 중요도(가중치)는 학계, 전문가, 평가대상기관 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산출하였다. 다음의 표는 2021년도 내부청렴도 설문항목 및 가중치이다.

〈 내부청렴도 측정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2021년 기준) 〉

※ ()안은 2021년도 가중치(2022년 평가 시 적용항목과 가중치는 변경될 수 있음)

측정부문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청렴 문화 (0.465)	조직 문화 (0.631)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161)
		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6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67)
		업무처리 투명성 (0.133)
		업무처리 책임성 (0.130)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0.135)
		퇴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113)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458)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542)
업무 청렴 (0.535)	인사 업무 (0.413)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0.415)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0.389)
	예산 집행 (0.330)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0.420)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0.371)
	업무지시 공정성 (0.257)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282)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718)

▣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정의 및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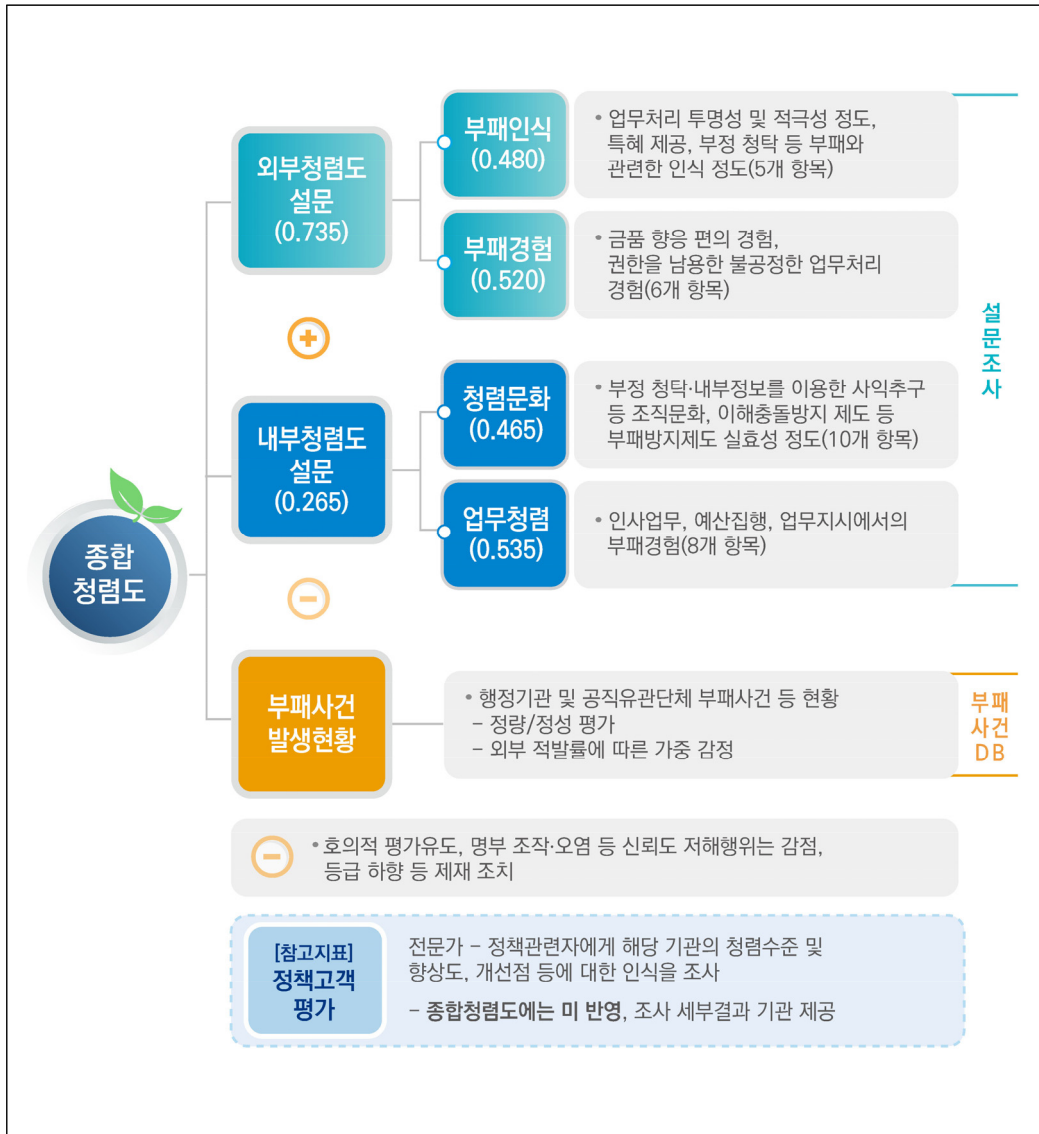
초기의 설문조사만을 기반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은 실제 발생한 구체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관의 청렴도와 실제 청렴도 측정 결과가 괴리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외부청렴도 설문조사의 경우 직접적인 대민접촉이 있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측정업무로 선정하고 해당 업무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의 청렴도는 높게 나왔지만 측정업무 이외의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민원인과 공직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도 측정 결과와 국민 인식 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인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반영하였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실제 부패행위가 발생한 정도’로 정의된다. 평가기간 중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현황,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부패사건 자료 등을 활용해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는데, 점수화 산식은 부패공직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 정원 및 부패사건 발생 시점이 반영된다. 또, 주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부패사건의 외부기관 적발비율이 높은 기관 등은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감점이 발생할 수 있다.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외부청렴도 설문결과와 내부청렴도 설문결과를 가중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으로 반영되며, 종합청렴도에서 감점되는 부패사건 발생 현황 점수는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합산한 점수와 같다. 참고로,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외부·내부 청렴도 점수는 각각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반영되기 이전 설문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점이 중복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 일반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측정모형(2021년) 〉



※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3. 청렴도 측정 방식

▣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종합청렴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지수 중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는 주로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된다.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에게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된 변수, 즉 공공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경험 및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 범위를 정하고, 설문지를 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조사를 통해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을 모집단이라고 하며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 한다. 조사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census)와 그 중에서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표본조사(sample survey)가 있다.

표본조사를 실시할 때 모집단의 일부만을 조사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가 야기될 수 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의 경우는 표본오차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표본조사보다 많은 대상을 조사하기 때문에 설문 및 면접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표본오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합친 총오차를 계산하면 표본조사의 총오차가 오히려 낮아질 수도 있다.

청렴도 측정은 매년 약 700개의 공공기관의 민원인, 소속직원을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하고 있는데, 모집단 규모의 방대함과 전수조사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를 위한 표본은 모수추정에 대한 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확률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 :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 추출 방법

표본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 표본추출과 비확률 표본추출로 나누어진다. 확률 표본추출은 표본요소가 표본으로 표출될 확률이 0이 아니고 그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는 표출방법이다. 비확률 표본추출은 조사자의 편의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표본요소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없는 표출방법이다.

◇ 확률추출법의 대표적인 방법 예시

- 단순무작위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 : 모집단에 포함된 모든 구성원들이 뽑힐 확률을 동일하게 하는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 통계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추출 방식
 - 단순무작위추출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단위들의 목록인 추출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추출틀 내의 모든 단위들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은 같아야 함
- 층화무작위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 모집단을 먼저 서로 겹치지 않는 여러 개의 층으로 분할한 후, 각 층에 배정된 표본을 단순무작위추출법에 따라 추출하는 방법
 - 층화무작위추출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는 몇 개의 집단(층, stratum)으로 나누어야 함
 - 모집단을 효과적으로 층화할 경우 단순무작위추출에서 구한 추정량보다 오차가 적게 되어 추정의 정도를 높일 수 있고, 각 층 내부에 있는 추출단위들이 서로 유사하여 각 층 내부에서 특성치의 변동이 적을 때(단위 특성치들이 동질적일수록) 단순무작위추출법에 비해 효과적이며, 전체 모집단에 대한 추정뿐만 아니라 각 층별 추정결과도 얻을 수 있는 장점
-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 : 표본추출틀에서 k번째 간격마다 하나씩의 단위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
 - 표본추출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렬한 뒤 k번째 단위를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 선정이 매우 수월하며 선택오차가 줄어들고, 모집단 추출틀이 랜덤하게 배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통추출법으로 표본을 뽑아도 거의 단순무작위추출법과 같은 효과가 있어 단순무작위추출법의 대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표본이 모집단 전체를 잘 반영하게 되어 있어 표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모집단의 어느 부분만 치우쳐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음

외부청렴도 설문조사는 다양한 공공기관의 다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 업무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실제 표본 추출은 해당 공공기관의 하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표본을 할당하기 이전에 조사대상기관별로 하위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도록 하위기관 선정원칙을 수립한다. 이러한 하위기관 선정원칙이 정해지면 해당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 표본을 할당한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하위기관이 있는 기관과 없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하위기관이 많은 기관의 경우, 하위기관별로 층화한 후 표본을 할당하고 있다. 업무별로는 상위 업무 최소 표본을 우선 할당한 후, 하위업무별로는 하위 업무별로 가급적 고른 표본수가 얻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업무 리스트 수에 제곱근을 부여해 비례할당하는 제곱근 비례할당 방법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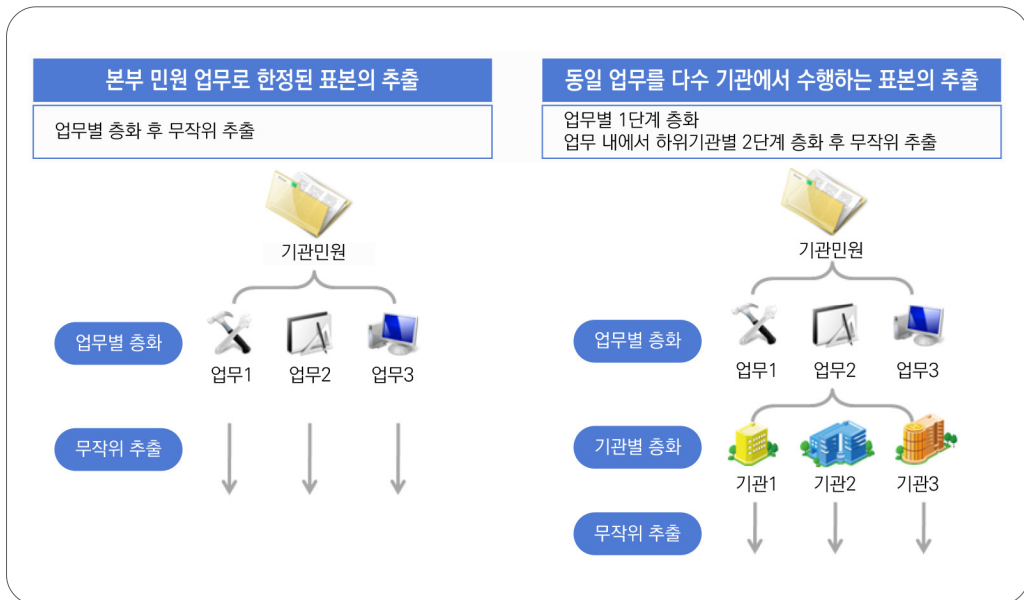
〈 외부청렴도 조사의 표본할당 방법 〉



표본을 할당한 후 할당표본 수만큼 표본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외부청렴도 조사에서의 표본추출방법은 우선 업무별로 층을 나눈 후 해당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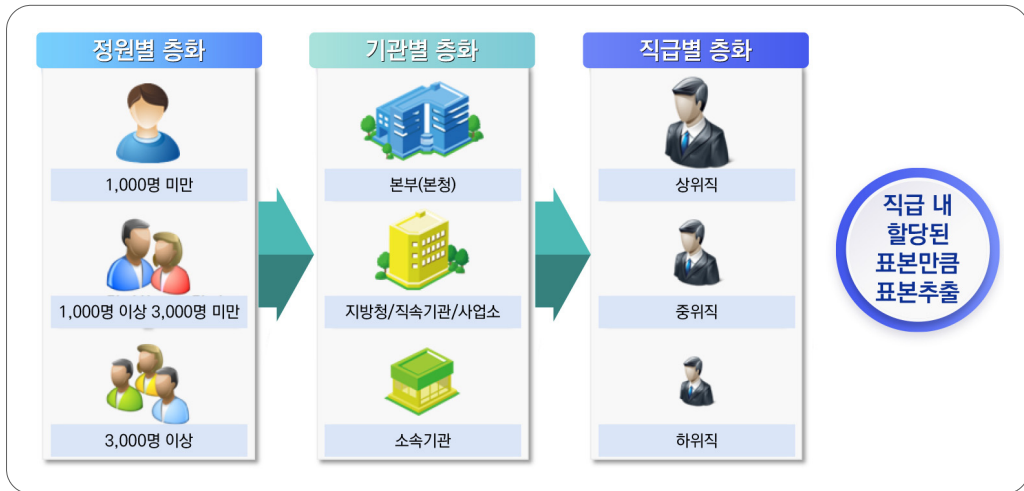
내에서는 계통추출방법을 통해 무작위추출하게 된다. 동일업무를 다수 하위기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업무별로 1단계 층을 나눈 후 해당 층 내에서 각 하위기관별로 다시 층을 나누고 해당 층 내에서 계통추출방법을 통해 무작위 추출한다. 실제 표본을 할당하고 추출하는 전 과정은 기관의 성격이나 하위기관의 존재 유무, 업무의 특성,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리스트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화되어 처리한다.

〈 외부청렴도 조사의 표본추출 방법 〉



내부청렴도 조사의 경우에도 층화계통추출법을 이용하는데, 소속직원을 조직 및 직급별로 층화한 후, 해당 조직 및 직급 내에서 k번째 공직자를 추출하여 진행한다. k번째 공직자를 추출하기 전에는 리스트 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규칙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름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한다. 계통추출법의 경우 리스트상 규칙성이 있을 경우 표본추출 결과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내부청렴도 조사의 표본추출 방법 〉



2) 설문지의 구성

외부·내부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항목은 앞의 세부 측정내용에서 살펴봤다.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측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대상이 갖는 속성의 수준에 대응되는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 척도는 척도의 측정방식 또는 척도의 모양을 기준으로 선택형 척도, 순위형 척도, 리커트 척도 등으로 분류된다. 청렴도 설문 항목은 선택형 척도와 리커트 척도를 활용해 구성한다.

선택형 척도(choice method)는 비연속적인 측정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양자택일형, 단일항목선택형, 다항목선택형이 있다. 선택형 척도는 숫자에 양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확인과 분류에 관한 정보만이 내포되어 있다.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에서도 부패경험 여부와 그 빈도, 규모로 점수화되는 부패경험 설문항목에서 선택형 척도가 사용된다.

■ 선택형 척도(양자택일형) 예시

외부청렴도는 측정대상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경험에 있는 민원인에게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경험 여부를 설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생님 본인 또는 선생님의 동료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제공토록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선택형 척도(단일항목선택형) 예

금품·향응·편의를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에게
부패경험의 빈도를 설문

지난 1년간 앞에서 언급한 금품을 요구받거나, 직접 제공한 경험은 모두 몇 번
입니까?

1. 1번
2. 2번
3. 3번
4. 4~5번
5. 6~7번
6. 8~10번
7. 11~15번
8. 16번 이상

■ 선택형 척도(다항목선택형) 예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에 대한 추가 참고
질문으로 제공동기를 설문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제공하였다면, 제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담당 공무원(직원)이 요구해서
2.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3.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4. 일의 성사나 처벌 완화를 위해
5.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6. 관행상/인사차/친분유지를 위해
7. 기타(적을 것)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는 서술형 문장을 제시하고 각 문장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하는 정도를 연속선상의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청렴도 측정에서는 리커트 척도 중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7점 척도는 4점이나 5점 척도에 비해 변별력이 높고, 11점 척도에 비해 응답자가 평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즉 청렴도 측정에서는 응답 편의 및 변별력 확보를 함께 고려하여 7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 리커트 척도 예시

투명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갑질행위 정도 등 부패에 대한 인식을 설문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다소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설문조사 방식

설문조사 방법은 일반적으로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이 있다.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외부청렴도 조사는 주로 전화조사로 진행하고, 2013년부터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도입 당시 사전조사(pilot survey)를 통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직접적인 부패경험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면접원이 직접 대면해서 물어볼 경우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우려되었다. 이에 응답률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응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청렴도 조사 시 전화조사방식을 활용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민원인의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면 응답자가 편한 시간에 어디서든 응답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다.

내부청렴도 조사의 경우, 온라인 조사로 진행한다. 청렴도 측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 조사는 우선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구성하여 설문지 사이트를 개설하고 측정대상자에게 조사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측정대상자는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정보를 따라 조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설문에 응하게 된다. 2013년부터 내부청렴도 조사에도 응답의 비밀보장과 응답의 편의성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폰 조사를 도입·활용하여 응답률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있다. 내부청렴도 조사를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소속직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 환경에서 온라인을 통해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고 : 주요 설문조사 방법의 장·단점

- 면접조사 : 면접원이 응답자를 한 사람씩 직접 찾아가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과거부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장점) 질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응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 다시 물어볼 수 있으므로 복잡한 질문도 가능하며, 신뢰성이 높음
 - (단점) 전화조사나 우편조사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민감한 문항의 경우 응답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전화조사 : 전화를 이용하여 면접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이 널리 사용되어 편의성과 신속성 제고
 - * 면접자가 전화기와 연결된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전화를 건 후, 화면에 나타난 질문을 읽고 응답을 바로 입력하는 방식
 - (장점) 간편·신속하며,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면접조사보다 응답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접근이 용이하며, 특히 방문에 대한 경계심이 큰 경우에는 면접 조사에 비해 전화조사의 접근 가능성이 훨씬 높음
 - (단점) 목소리로만 접해야하기 때문에 시각적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질문의 길이와 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온라인조사 : 응답자가 웹브라우저, 전자우편, 전자설문 등을 통하여 응답하게 하고, 그 내용을 조사기관의 서버 컴퓨터에 전달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방식
 - (장점) 질문 파일 및 자료처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부호화 및 자료입력 작업

까지 동시에 실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조사 과정의 비밀보장이 용이

- (단점) 조사 대상자가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국한되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어렵고, 대표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면접 조사나 전화조사에 비해 즉각적인 응답을 받기 어려움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부패행위, 소극행정(중앙·지방 행정기관만 해당), 직무관련 성 비위(고위직만 해당)로 징계를 받았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행위나 직무관련 성 비위 혐의가 확인(감사상 징계요구, 기소 및 유죄판결 등)된 경우 이를 점수화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점수화는 감점 적용 대상이 되는 전체 사건을 점수화 산식에 따라 기관별로 1차적으로 정량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건이 발생했거나 외부기관의 적발 비율이 높은 기관 등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 정량화된 결과에 정성적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국공립대학의 경우 점수화 대상기간(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 동안의 부패공직자 징계현황 위주로 처분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점수화하되,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다수가 연루된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징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경우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부패행위에 대한 기관의 자율적인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의 자체적발에 의해 드러난 부패사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패공직자 징계 양정기준의 격차 등으로 징계 관련 통계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공직유관단체,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점수화 대상기간(전년도 7월~당해연도 6월) 동안의 부패공직자 징계 현황과 함께 언론·검찰 보도 및 감사원·상급기관 감사자료 등을 통해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사건 현황을 반영해 점수화하고 있다. 2018년까지 공직유관단체

등은 정성평가만을 적용해 점수화했으나, 2019년부터 전체 사건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식을 종합해 점수화했고, 2021년에는 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전체 사건에 대한 정량화와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정성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점수화했다.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자체적발에 의해 드러난 부패사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량화 산식은 부패행위의 경중과 영향력을 고려해 부패행위자의 직위와 부패 금액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고, 기관의 정원과 부패행위의 발생시점을 반영하여 감점규모를 최종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주요 사건 등에 추가로 적용되는 정성평가는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정량평가 결과에 대한 조정 여부·필요성 및 조정 범위(수준)를 결정해 반영한다.

정량화 산식에 따른 점수화 결과와 전문가 심의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점수화하면 기관별 최종 감점 규모가 산정되고, 이 결과는 외부·내부 청렴도를 가중 합산한 설문조사 최종 결과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4. 청렴도 측정 자료

자료는 조사자가 조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수집하는 1차 자료와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수집한 2차 자료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1차 자료로는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민원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가 있고, 2차 자료로는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출 및 언론·감사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수집한 공공기관의 부패공직자 징계자료와 부패사건 자료 등이 있다.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집하는 기존 자료는 아래와 같다.

설문조사를 위한 자료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의 명단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의 자료 등 제출 요구권에 따라 측정 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청렴도 설문조사를 통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주체, 즉 각 기관의 외부청렴도를 평가하는 민원인(대기관 업무인 경우는 공직자), 기관의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내부 공직자(소속직원)의 명단인 측정대상자 명부를 제출받아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범위는 외부청렴도의 경우 당해 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간(2021년도 청렴도 측정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해 해당 공공기관 및 담당자와 직접 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이며, 내부청렴도는 측정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 측정 대상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으로, 본부, 소속기관, 지역본부 등 측정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범위는 당해연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출 기준에 맞도록 제출해야 하며, 측정대상자 명부를 임의로 누락·훼손하는 등 제출한 측정대상자 명부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한 경우로 인정되어 종합청렴도 점수가 감점되는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각급 기관의 청렴도 측정 담당자는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시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며, 세부적인 측정대상자 명부작성 기준은 각 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 실시계획에 반영된 기준에 따라 제출 범위를 확인·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해당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작성·제출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의 설문조사 명부 제출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측정대상자 명부는 실시계획을 통해 배포된 엑셀 파일 형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측정대상자 명부에는 민원인, 공직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로 제출명부에 수록된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파일 암호 설정, 설정된 암호는 해당 국민 권익위원회 담당자에게 별도 통보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명부작성 단계별 확인사항 〉

명부작성단계		확인 사항
①작성대상기간 등 작성기준 확인		- 청렴도 측정실시 계획 상 기준 및 업무별 세부기준 확인(작성 범위 및 제외 대상 등) - 외부청렴도 :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 최근 1년간 - 내부청렴도 :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 1년 이상 재직자 - 업무별 측정대상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 실시계획에 따라 위원회 담당자와 협의 후 표본을 추출하여 제출
②명부 내용 작성	외부 청렴도	- 필수 기재사항 : 업무처리일, 측정대상자 성명, 전화번호 - 민원인의 이메일 파악이 가능한 경우, 추가 기재 - 세부업무명은 반드시 기재 - 중복민원인을 제거하지 말고 전체 처리건수 기준으로 제출 - 대리/대행인이 있는 경우 민원인과 대리/대행인 모두 제출
	내부 청렴도	- 필수 기재사항 : 측정대상자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 측정대상기관의 본부, 소속기관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작성 순서는 본부/소속기관별 직제(과·팀) 및 직급순 - 직급 체계가 다른 경우는 해당 상당직급으로 표시
③명부 확인		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각종 대장, 서류 등과 대조 확인
④보안조치		명부 작성·관리·제출 시 반드시 암호 설정(공문송부 시 비공개로 설정)
⑤명부 제출		- 파일 형태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 - 측정대상기관 단위로 본부 또는 본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청렴도 측정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

업무 내용	보안 조치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시	- 작업 중인 명부 파일에 대한 암호 설정 - 명부 작성을 위한 각종 근거서류에 대한 관리 철저 - 명부 작성 완료 후 작성에 참고했던 근거서류 사본 파기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시	- 측정대상자 명부 파일에 암호 설정 - 시스템을 통한 제출 시 측정대상자 명부 파일에 암호 설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준수(공문 송부 시 비공개로 설정) - 명부 송부 후 수령 여부 확인
측정대상자 명부 제출 후	- 소속직원 및 민원인 등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 안내 - 제공일자, 제공받는 기관,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 항목 등

▣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영 자료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대상 기간(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 동안의 부패공직자 징계현황(공직유관단체인 경우 감사원·상급기관 감사결과 자료 포함)과 전체 징계자가 포함된 징계대장이다. 이때 부패행위자 징계대장에 포함되는 부패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금지법 상의 모든 부패유형이 포함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는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각급 기관의 고위직의 경우 직무관련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거나 감사·수사·재판 결과 혐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수집하는 자료는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부패행위를 반영하기 위한 언론·검경수사 보도자료, 감사원 및 상급기관 감사자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교차 검증) 등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해당 공공기관의 확인과 소명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를 확정하며,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집한 전체 감점 대상 자료는 정량·정성 평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

5. 점수 산정 방식

Point1.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는 10점 만점 체계로 산출한다.

: 종합청렴도에서 하위항목 점수까지 모든 청렴도 모형 내의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

Point2. 설문조사 점수 산출 체계는 가중합산 방식이다.

: 하위항목에서 하위영역으로, 하위영역에서 상위영역으로, 상위영역에서 각 세부 청렴도로 점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며, 합산 시에는 가중치를 적용한 방식을 따른다.

Point3. 설문조사 하위항목 점수 산출 방식에는 ‘응답자 개별평가형’과 ‘기관 총합 평가형’ 방식이 있다.

: ‘기관 총합평가형’ 방식인 부패경험항목은 누적감마확률분포에 따라 산출되는 UCP를 활용한 산식으로 점수화하고, 상위영역으로 가중합산하기 전에 평균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준화한다.

Point4. 감점 처리 항목의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

: 외부와 내부청렴도 산출 시에는 ‘부패제공동기’,
 외부청렴도 산출 시에는 내부청렴도 설문의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종합청렴도 산출 시에는 ‘부패사건 발생현황’이 감점 항목으로 적용된다.

설문조사 결과의 점수화

청렴도 설문 점수는 모두 10점 만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하위 항목의 점수도 마찬가지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적은 상태, 즉 청렴함을 의미한다. 청렴도 설문 점수 산출방식은 각 설문항목별 점수에 해당 설문항목의 가중치를 곱하여 부문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부문별 점수에 해당 부문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외부·내부청렴도 점수를 도출한다.

설문 점수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각 설문문항별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설문문항 점수산출 방식은 응답자 개별 평가형 설문인지, 기관 총합 평가형 설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응답자 개별 평가형 문항이란 7점 척도 형태로 되어 있는 설문문항으로, 응답자 개인별로 점수가 집계된다고 하여 응답자 개별 평가형이라고 한다. 부패 인식 설문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A설문항목의 점수를 구하는 것이라 가정하면, 먼저 A설문항목의 개별 응답자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7점 척도 점수를 10점으로 환산하는 공식과 각 척도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설문문항의 내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척도별 배점이 달라진다. 긍정적인 설문인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면 0점으로 환산되고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면 10점으로 환산된다. 부정적인 설문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환산된다.

〈 7점 척도의 10점 환산 공식 및 각 척도별 배점 〉

$$10\text{점 환산 점수} = \frac{(7\text{점 점수} - 1)}{6} \times 10$$

응답항목	척도	배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0 or 10
거의 그렇지 않다	2	1.67 or 8.33
별로 그렇지 않다	3	3.33 or 6.67
보통	4	5
약간 그렇다	5	6.67 or 3.33
상당히 그렇다	6	8.33 or 1.67
매우 그렇다	7	10 or 0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개별 응답자의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A설문항목의 업무별 점수를 산출한다. 업무별 점수는 해당업무에 해당하는 개별 응답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즉, ㉠업무의 응답자가 총 50명이었다면 이 50명의 개별 응답자 점수를 모두 더하여 응답자수 50으로 나누면 A설문항목의 ㉠업무 점수가 산출된다.

$$A\text{설문항목의 } \textcircled{1}\text{업무 점수} = \frac{\textcircled{1}\text{업무 응답자 점수의 합}}{\textcircled{1}\text{업무 응답자 수}}$$

A설문항목의 ㉠, ㉡, ㉢ 업무별 점수를 산출하였다면 A설문항목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A설문항목의 점수는 각 업무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즉 A설문항목의 ㉠업무, ㉡업무, ㉢업무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업무 수 3으로 나누면 A설문항목의 점수가 산출된다.

측정업무별 결과를 외부청렴도에 반영하는 방법에는 각 업무의 모집단 구성비를 그대로 청렴도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모집단이 큰 업무를 더 많은 비중으로 외부청렴도에 반영)과 모집단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 업무를 동일한 비중으로 외부청렴도 점수에 반영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통의 여론조사에서는 모집단 구성비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렴도 측정에서 각 업무는 동일한 비중으로 외부청렴도에 반영된다. 모집단이 작은 업무의 경우에도 민원인과 공직자와의 결탁정도가 높아 부패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개연성이 모집단 구성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업무별 부패개연성에 따라 반영 비중을 정할 경우 외부청렴도 산출이 보다 정확해질 수 있으나 업무별 부패개연성을 임의로 계량화할 수 없으므로 업무별 결과를 동일 비중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text{설문항목 점수} = \frac{\text{㉠업무 점수} + \text{㉡업무 점수} + \text{㉢업무 점수}}{\text{업무 수}}$$

내부청렴도에서는 개별응답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각 설문항목의 점수를 산출한다. 즉, 설문항목의 응답자가 총 50명이었다면 이 50명의 개별 응답자 점수를 모두 더하여 응답자수 50으로 나누면 A설문항목의 점수가 산출된다.

$$A\text{설문항목 점수} = \frac{\text{개별응답자 점수의 합}}{\text{응답자 수}}$$

기관 총합 평가형 문항은 질문은 개인별로 이루어지지만 점수집계는 개인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전체로 이루어져 기관 총합 평가형이라고 한다. 외부·내부 청렴도의 부패경험 측정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 기관총합평가형 설문문항(2021년도) 〉

	부패경험 설문
외부청렴도	• 금품·향응·편의 관련 5개 경험 항목 •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처분에 대한 1개 경험 항목
내부청렴도	• 인사 관련 3개 경험항목 • 예산집행의 3개 경험항목 • 업무지시 공정성의 2개 경험항목

기관의 부패 경험 정도와 부패 빈도·규모 점수는 기관 전체의 부패 경험률과 평균 빈도·규모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부패 경험률은 기관의 금품·향응·편의 등 부패경험 응답자 수를 집계한 후, 이를 기관별 전체 응답자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기관별 부패 경험률} = 100 \times \frac{\text{기관 부패 경험자 수}}{\text{기관별 전체 응답자 수}}$$

부패경험 빈도와 규모 항목은 우선 기관별 총빈도와 총규모를 구한다. 즉 부패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빈도를 정해진 적용값에 따라 구한 후 이를 모두 더하면 해당 기관의 부패경험 총빈도가 된다. 총규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외부청렴도 ④응답자가 금품을 8~10번 정도 제공하였다고 대답하였다면 ④응답자의 금품제공 빈도 적용값은 9가 되며, 다른 응답자의 금품제공 빈도 적용값을 구하여 모두 더하면 해당기관의 금품제공 총빈도가 산출된다.

$$\text{④기관 부패경험 빈도·규모} = \text{응답자별 경험 빈도·규모 적용값의 합}$$

2021년도의 부패경험 빈도 또는 규모 점수를 구할 때 적용하는 값은 다음과 같다. 이 적용값은 설문문항 보완 등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 외부청렴도 부패경험 빈도·규모 적용값

▶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1번 = 1,	2번 = 2,	3번 = 3,	4~5번 = 4.5,
6~7번 = 6.5,	8~10번 = 9,	11~15번 = 13,	16번 이상 = 16

▶ “금품/향응 경험 규모”

5만원 이하 = 2.5,	6~15만원 = 10.5	16~30만원 = 23,
31~50만원 = 40.5,	51~100만원 = 75.5,	101~200만원 = 150.5,
201~300만원 = 250.5,	301~500만원 = 400.5,	501~1,000만원 = 750.5,
1,001만원 이상 = 1,001		

■ 내부청렴도 부패경험 빈도·규모 적용값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1번 = 1,	2번 = 2,	3번 = 3,
4~5번 = 4.5,	6~10번 = 8,	11번 이상 = 11

- ▶ 예산집행 중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수당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 빈도”, 업무지시 공정성 중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연1회 = 1,	연2~3회 = 2.5,	분기1~2회 = 6,
월1회 = 12,	월2회 = 24,	월3회 이상 = 36

-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50만원 이하 = 25.5,	51~100만원 = 75.5,	101~200만원 = 150.5,
201~300만원 = 250.5,	301~500만원 = 400.5,	501만원 이상 = 501

- ▶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 수당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 규모”

50만원 이하 = 25.5,	51~100만원 = 75.5,	101~300만원 = 200.5,
301~500만원 = 400.5,	501~1000만원 = 750.5,	1,001만원 이상 = 1001

- ▶ 예산집행 중 사업비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경험 규모”

1,000만원 이하 = 500.5,	1,001~5,000만원 = 3,000.5,
5,001만원~1억원 = 7,500.5,	1억1만원~5억원 = 30,000.5,
5억1만원~10억원 = 75,000.5,	10억1만원 이상 = 100,001

기관의 부패경험 총빈도/총규모를 기초로 총빈도와 총규모를 전체 응답자수로 각각 나누어 기관의 부패경험 평균빈도와 평균규모를 산출한다. 이때 응답자란 부패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사람(경험자)이 아니라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설문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text{기관별 부패경험 평균 빈도·규모} = \frac{\text{기관 부패경험 총빈도·총규모}}{\text{기관별 전체 응답자 수}}$$

부패경험에 대한 기관종합평가형 문항의 설문문항 점수는 응답자의 부패경험 평균빈도·규모와 경험률을 다음의 공식에 넣어 산출한다.

■ 부패경험 문항 점수 산정식

- 기관의 ‘경험빈도’ 점수

$$= 10 \times \left(1 - \frac{\text{기관별 평균경험빈도}}{UCP_1} \right)$$

* UCP_1 = 기관별 평균경험빈도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의 ‘경험규모’ 점수

$$= 10 \times \left(1 - \frac{\text{기관별 평균경험규모}}{UCP_2} \right)$$

* UCP_2 = 기관별 평균경험규모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기관의 ‘경험률’ 점수

$$= 10 \times \left(1 - \frac{\text{기관별 평균경험률}}{UCP_3} \right)$$

* UCP_3 = 기관별 평균경험률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부패경험 항목 점수 산정식에 따라 구해진 점수는 ‘표준화’ 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된다.

부패경험 항목은 측정 산식에 따라 기관별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산출될 수 있어 과도한 영향력으로 청렴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다. 부패경험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는 사안이기는 하나, 점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부패경험 응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부패경험 응답이 없는 대다수의 기관과 한 건이라도 발생하는 기관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기관별로 드물게 발생하는 부패경험의 유무가 각 기관의 점수를 과도하게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경험 항목으로 인한 과도한 점수편차를 축소할 필요성이 발생했다.

표준화는 항목 간 표준편차 차이가 큰 경우, 편차를 완화하고 상대적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용되는 방법이다. 항목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해당 항목의 표준편차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1”로 축소 조정)하는 방법으로 편차가 큰 부패경험 항목의 영향력을 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점수 편차가 작은 인식 항목이

■ 외부 부패사례 내부 응답 예

지난 1년간 귀 기관의 동료, 상사 또는 하급자가 외부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수수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결과 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 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감점 산식 〉

$$\text{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 감점} = \text{상수} \times \frac{\text{외부 부패사례 내부응답수}}{\sqrt{\text{내부청렴도 표본수}}}$$

※ 외부 부패사례 설문 문항 2개 중 하나라도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외부부패사례 내부응답수'로 반영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의 점수화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감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확정되면 1차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부패사건지수를 산출해 부패사건 발생현황의 정량화된 감점 규모를 점수화한다.

□ 1단계 : 평가 요소별 원점수 산출

$$\bullet X_k (\text{K기관 직위 원점수}) = \frac{(0.445)X_{k1} + (0.330)X_{k2} + (0.225)X_{k3}}{\sqrt[4]{N_k}}$$

* X_{k1} X_{k2} X_{k3} : 관리직, 중간직, 하위직 부패사건 발생 빈도(발생시점별 가중 적용)

* N_k : k기관의 정원

$$\bullet Y_k (\text{K기관 금액 원점수}) = \frac{\sqrt[2]{Y_{k0}}}{\sqrt[4]{N_k}}$$

* Y_{k0} : 기관에서 발생한 부패사건 금액 합산 총액(발생시점별 가중 적용)

* N_k : k기관의 정원

□ 2단계 : 평가 요소별 10점 환산 점수 산출

$$\bullet X_k^* (\text{K기관 직위 10점 환산 점수}) = 10 \times \left(1 - \frac{X_k}{UCP_x}\right)$$

$$\bullet Y_k^* (\text{K기관 금액 10점 환산 점수}) = 10 \times \left(1 - \frac{Y_k}{UCP_y}\right)$$

* UCP는 항목별 점수 분포에 근거하여 누적감마확률분포의 95%에 해당되는 값

□ 3단계 : 부패사건지수 산출

$$\bullet W_k (\text{K기관 부패사건지수}) = (0.423)X_k^* + (0.577)Y_k^*$$

* X_k^* Y_k^* : k기관의 10점 환산 직위, 금액 점수

〈 부패사건 발생현황 1차 정량화 감점 산식(2021년) 〉

$$\text{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 정량 감점} = 0.70 \times \left(1 - \frac{\text{해당 기관의 부패사건지수}}{10}\right)$$

대부분의 기관은 정량 산식에 따라 점수화된 감점이 최종 감점이 되지만, 정량평가 결과를 추가로 가중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전문가 심의회에 따른 정성평가가 추가된다.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다수 구성원이 연루된 조직적 사건이 발생한 기관, 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외부 기관의 적발비율이 높은 기관 등이 대상이 된다. 전문가 심의회에서는 대상이 되는 기관별 부패사건에 대해 사안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정량 산식의 최대 감점 (0.7점) 또는 해당 기관의 정량 감점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감점을 가중하는 등 정량 산식으로 점수화된 결과를 일부 조정한다. 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은 정량산식에 따라 점수화된 감점과 전문가 심의회를 통해 정성 평가한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감점 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종합청렴도 결과 산정

종합청렴도는 외부·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점수에 해당 영역의 가중치를 곱해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1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전체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각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를 기반으로 기관별 청렴도 등급이 산정된다. 기관별 등급은 각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반영해 분류한 기관 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이용해 기관유형별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청렴도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산정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음(청렴함)을 의미한다. 1등급은 각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보다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점수가 높은 기관에 부여되며, 5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에서 유형별 표준편차의 1.5배를 뺀 점수 미만인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기관유형 내에서 5등급이더라도 청렴도 점수를 기준으로 전체 기관 분포에서 4등급 기준 이상인 기관은 4등급을 부여하여 기관유형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6. 청렴도 측정 절차

〈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절차 개요 〉



▣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청렴도 측정을 위해 그 해의 측정 대상기관과 측정의 기본방향을 담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2에 근거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청렴도 측정의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전체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측정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전체 공공기관 중 청렴도 측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선정해 평가를 실시한다.

행정기관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의 청렴도는 전수 측정하고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의 규모와 성격, 부패현황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매년 측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공문을 통해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이 공유된 이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평가 방향과 기준이 담긴 실시계획을 마련하는데, 이에 반영될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선정, 청렴도 측정 항목 등 측정모형, 세부 자료제출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이 검토된다.

▣ 외부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선정 및 대상기관 의견수렴

외부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대표성이 있거나 부패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대민·대기관 업무로 설문조사가 가능한 대상 업무를 선정해야 한다. 측정 대상업무가 정해져야 설문조사 대상자가 정해져 설문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측정 대상업무는 충분한 수의 측정대상자 확보가 가능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또는 업무 상대방인 공직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 청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기관의 대표적 업무이거나 부패개연성이 있는 업무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담,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이 요식행위에 의해 종료되거나 단순 반복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는 청렴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기관은 동일한 업무를 선정하고, 공직유관 단체의 경우에도 유사 성격의 기관은 업무 선정 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기존 측정대상 업무 유지 또는 신규 업무 추가 기준

- ①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사례가 있는 업무
- ② 관련 예산 규모가 크거나, 해당기관과 접촉하는 국민의 규모가 커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
- ③ 부패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업무

• 측정대상 업무 제외 기준

- ① 업무처리 대상자가 크게 감소하여 표본조사가 곤란한 업무
※ 다만, 해당업무가 기관의 핵심 업무이며, 제외 시 청렴도 측정대상기관에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 측정 실시
- ② 조직개편, 업무이관 등으로 소관기관이 변경된 업무
- ③ 청렴도 측정결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부패경험이 없고, 부패인식 점수가 높아 계속 측정의 실효성이 낮은 업무

• 측정업무 통합/세분화 기준

- ① 업무처리절차, 측정대상자의 범위 등이 유사하여 하나의 업무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합 측정
- ② 모집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 통합
- ③ 측정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구체적인 부패취약분야 진단이 어려운 경우 측정업무 세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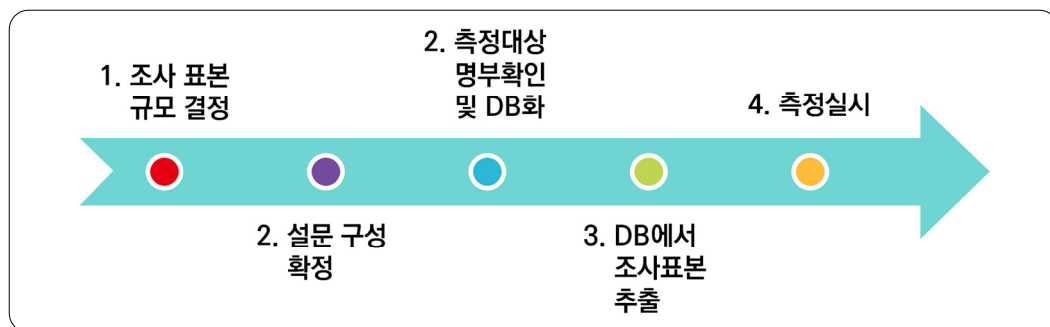
각 기관별 청렴도 측정대상업무 선정은 매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진다. 선정 과정에서 각 기관의 설치 목적, 주요 기능 및 업무, 감사자료, 언론 등에 보도된 부패사례 등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주요 대민·대기관 업무의 절차, 연간 처리 실적, 민원인 등과의 접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에 현황 자료 등의 제출, 현지점검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확정된 측정대상업무는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을 통해 각급 기관에 통보된다.

설문조사 측정대상자 명부 및 부패사건 관련 자료 제출

각급 기관에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이 통보되면 해당 기관은 실시계획 상의 기준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청렴도 측정 대상기간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이므로 자료 제출은 실시계획이 통보되고 7월 중에 이루어지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전문조사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요구되거나 제출자료의 수정 보완이 요청될 수 있다.

측정대상자 명부와 부패사건 관련 자료는 민감·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급 기관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한 후 실시계획 통보 시 안내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에게 암호를 별도 통보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청렴도 측정 실시 및 측정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청렴도 설문조사를 위해 조사 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표본의 규모 및 표본할당 기준을 정하고, 설문지를 구성·확정한다. 각급 기관의 검증된 측정대상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조사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외부청렴도는 8월부터, 내부청렴도는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진행되며, 각급 기관은 내부청렴도 실시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청렴도 조사 실시 안내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해 내부청렴도 설문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 중 각급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와 각급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로 측정되므로 기관에서 제출하는 측정대상자 명부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측정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측정대상자 명부 누락, 표본 관리행위, 부패공직자 자료제출 등 청렴도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되, 전년도 점검기관 중 신뢰도 저해행위가 확인된 기관 등 현지 확인이 필요한 기관은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현지점검 시 점검 대상기관은 제출한 측정대상자 명부 및 명부 작성 근거서류, 부패공직자 관련자료(징계대장 포함, 필요시 징계의결서 확인),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대장, 기관 인트라넷 및 내부 전산망이 연결된 컴퓨터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점검과 함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상시 제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를 제보 받고 있으며, 현지점검과 제보를 통해 확인된 신뢰도 저해행위는 감점 등 제재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해 종합청렴도가 산정되면 그 결과를 분석해 12월 중 발표하며, 공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3에 따라 해당기관의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II. 부패방지 시책평가(2021년도 기준)

1.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개요 및 평가 체계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과 함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시책평가는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외부 및 내부(소관 부서) 전문가 평가단이 서면평가하고, 기관의 이의제기 절차, 국민권익위 현지점검 등을 통해 실적 확인 후 점수 산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유형별로 등급을 산정(1~5등급)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273개¹⁾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2년 연속(2019~2020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으며,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8개 기관은 제외하였다. 또한, 평가 대상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준도 2020년 인구 50만명 이상에서 2021년 인구 4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국민생활 접점인 지방행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였다.

평가체계는 계획, 실행, 성과·확산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감점으로 포함시켜 4개 부문 7개 단위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기관 반부패 성과 창출의 핵심 요소인 기관장과 고위직의 의지와 노력을 독려하고, 작년 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익추구를 근절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20년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되고 규범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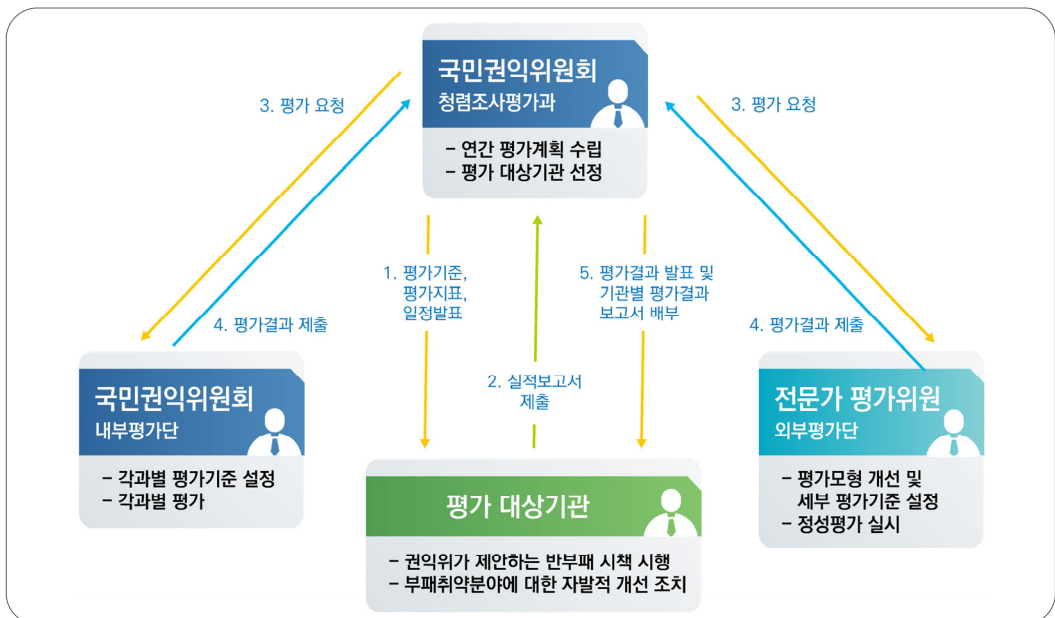
1)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59개, 시도교육청 16개, 국공립대학 16개, 공공의료기관 13개, 공직유관단체 124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운영기반 마련 실적도 지표에 포함시키고, 법정 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청렴 연수원 이외의 공공 교육훈련기관에서도 청렴교육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지표를 보완하였다.

〈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체계(감점지표 제외) 〉

계 획(1개)	실 행(9개)	성과·확산(7개)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 ▶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 계획' 이행 ▶ 청렴문화 확산 활동 ▶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 평가 ▶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절차





☐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매년 2~3월경 평가 대상기관과 그 해의 주요 평가 방향과 지표(안)를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한다. 이후 공문을 통한 의견제출 뿐만 아니라, 평가 대상기관이 참석하는 워크숍·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그 해의 평가지표(안)에 대해 지표 소관부서에서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이 지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또한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은 기본계획 통보이후 제출된 의견과 함께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표에 반영된다.

☐ 실시계획 수립·통보 및 각급 기관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기관 의견을 반영한 확정지표는 4월경 당해연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 각급기관에 통보된다. 각급기관에서는 확정된 지표에 따라 1년간 차질 없이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에 가장 먼저 제출하는 자료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이다. 기관에서는 통상 5월중 기관의 연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다른 실적자료와 마찬가지로 계획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반부패 시책 추진 및 실적 제출

반부패 계획을 제출한 각급 기관에서는 10월까지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제출한다. 시기는 통상 11월초~중순까지로 실적 제출 약 2주전 국민권익위에서 향후 일정, 제출 서식과 함께 실적입력을 공문 등으로 요청하게 된다. 일정이 다소 촉박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는 지표별 이행 실적을 미리 취합·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작성하는 등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지방 사무소나 소속기관 등이 다수 있는 대규모 공공기관에서는 시책평가 지표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국민권익위 제출 전 실적을 취합·점검하여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허위자료가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청렴포털을 통해 입력하게 되며 각급 기관에서는 서식에 따른 실적자료와 필요시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청렴포털에 업로드하게 된다. 정해진 기한을 넘으면 시스템이 단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기한이 지나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관에서는 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챙겨야 한다.

또한 제출 자료도 사전에 정해진 서식과 분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성평가 지표의 경우, 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제공된다. 대부분의 정량평가 지표는 분량에 제한이 없는 대신 정해진 서식에 따라 기관이 추진한 실적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증빙자료가 없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시책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1월~당해연도 10월까지이다. 즉 지표에 별도로 안내·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위 기간 동안의 시책추진 실적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평가 대상기간은 시책평가 연간 일정, 즉 계획 수립, 시책 추진, 자료 제출, 평가 및 발표 시기를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 1차 평가 및 이의제기 기간 운영

11월초 실적자료가 제출되면 국민권익위의 정량지표 소관부서에서는 실적을 확인하고 1차 평가를 진행한다. 1차 평가 결과는 청렴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일정기간 동안 이의제기 및 검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각급기관에서는 기관의 의견을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하게 된다. 또한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거나 요청받은 추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 결과는 개별 문의하거나 기관별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정량지표처럼 수치로 계량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성된 풀을 활용한 반부패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다. 정성평가 지표는 그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1차 평가와 이의제기 검토를 거친 정량지표와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정성지표 점수를 합치고 후술할 현지점검에 따른 신뢰도 저해 행위 등 각종 감점요소들도 반영하여 기관별 최종점수를 도출한다. 이 최종점수로 기관별 평가등급을 산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 현지점검을 통한 자료 검증 및 신뢰성 확보

통상 이의제기 기간 전후로 실적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제출된 실적이나 사례 내용에 대한 증빙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증빙자료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은 정성지표에 대한 증빙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이나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등이 해당한다. 실적이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부풀려진 경우 신뢰도 저해 행위에 해당하여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실시한다.

각급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실적과 준비된 증빙자료를 준비하되, 사전안내에 따라 필요시 추가 요청받은 자료나 문서를 구비하여 현지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결과 발표

최종점수로 산정된 기관별 등급은 다음해 1월말 ~ 2월중 발표된다. 청렴도와 마찬가지로 기관별 등급이외에 종합 및 지표별 점수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3. 기관별 평가 결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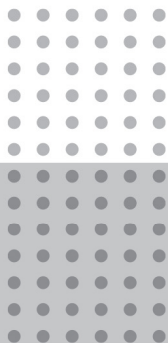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영역별·지표별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다. 가점과 감점 지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점을 반영하더라도 점수의 총합은 100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산출된 기관별 총점을 기반으로 시책평가 등급이 산정된다. 기관별 등급은 각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반영해 분류한 기관유형별 평균점수, 표준편차와 상수를 이용해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기관의 시책평가 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산정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에 따라 각종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효과적으로 추진하였음을 의미한다.

4. 결과 발표 및 활용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여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시책평가 결과와 지표별 세부결과는 기관에 제공되어 반부패 추진 노력이 다소 미흡한 분야를 발굴·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폭넓게 공유하여 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책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은 그 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일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3장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 2022년도 평가 기본방향 및 추진절차



제3장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개요

1. 종합청렴도 평가 개편의 목적과 배경

▣ 변화된 환경과 국민의 기대수준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에 처음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패방지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20년간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두 개의 평가 제도는 기관의 부패수준과 반부패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지원하는 등 많은 성과를 창출해왔다. 청렴도 측정 첫째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 관련 부패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4.1%에 달했으나, 2021년에는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 청렴도 측정이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2021년에 각각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71%, 국민의 6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2012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의 과학성을 높이 평가받아 UN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20년 간 공공부문의 부패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변했고,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금품 수수 등 전형적인 부패행위에서 나아가 부정청탁, 직권남용, 비밀·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사익추구 등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가 다양해졌다. 대검찰청의 공무원 부패범죄 유형별 추이 통계자료(대검찰청 범죄분석)를 보면 수뢰(뇌물을 주거나 받은) 유형의 공무원 범죄는 2002년 234건에서 2020년 203건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데 비해 직권남용 유형은 2002년 257건에서 2020년 1,151건, 직무유기 유형은 304건에서 1,051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그리고 지난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반부패 관련 법령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정비되었다. 국민들은 직권 남용과 갑질행위, 소극행정,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해서도 공직자의 부패로 인식해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청렴수준은 그만큼 높아졌다.

▣ 각급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반부패 개선노력 촉진·지원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 중 설문조사 중심의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데 비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청렴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반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성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나 기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라는 외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결과가 산정되어 각급 기관의 노력 정도가 기관의 청렴도 결과에 즉시·직접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요인으로 기존의 이원적 평가제도 운영 체계와 청렴도 측정 결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평가체계에서는 일선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02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를 도입·운영한 이래 지난 20년간 변화된 환경과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을 반영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측정·평가 내용과 방식 등을 매년 개선·보완해 왔으나, 측정·평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평가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결과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다 타당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 아울러, 그동안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소규모 준정부기관의 경우 국민의 생활에 영향력이 큰 대민 접점 기관임에도 대부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지 않아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서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 20년간 운영해 온 평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작업이 추진되었다.

▣ 반부패 노력·시스템까지 반영된 종합적인 청렴도 정보 제공

기관별 청렴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별개로 추진되어 그 결과가 각각 발표되면서 각급 기관과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었다. 또,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이 일치하지 않아 일부 기관들은 청렴수준에 대한 정보만 있고, 반부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한편, 국민들은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으로 측정된 청렴수준 외에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실적과 성과도 청렴수준 평가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평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 37.9%와 32.2%는 각각 민원인이 업무과정에서 체감한 부패수준, 내부직원이 내부에서 체감한 부패수준이라는 응답이 있었고, 20.5%의 응답자는 기관이 반부패를 위해 노력한 실적이 중요하다고 응답해 언론보도를 통한 부패공직자 사례 등 부패사건 발생현황(9.3%)보다도 높은 비중이었다.

이러한 여러 환경변화와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관별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을 이해관계자 체감도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반부패 개선 노력의 실적·성과 평가까지 종합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의 구성

2021년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기존의 청렴도 측정 설문 조사를 개편·재구성),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편·재구성),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평가하는 부패실태(기존 청렴도 측정에 반영한 부패사건 발생 현황)를 반영해 종합지표로 구성한 평가 체계다.

〈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



2021년에 각계의 의견수렴 결과와 기존 평가 결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평가 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한 각 평가영역별 반영방식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가중합산한 결과에서 부패실태를 종합감점한 형태이다. 의견 수렴 결과, 기관별 평가결과 편차(점수 편차)와 평가결과에의 영향력 등 시뮬레이션 결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 촉진·유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해 청렴체감도를 노력도 보다 다소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부패실태 감점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 반영한다.(평가제도 개편방안 기준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부패실태 감점은 최대 10% 잠정)

▣ 청렴체감도 측정

청렴체감도는 외부 업무과정에서 업무상대방이 체감(인식·경험)한 부패수준과 조직 내부 운영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체감(인식·경험)한 부패수준을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측정한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방식과 대상을 기본으로 하되, 부패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항목을 정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재편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청렴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패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어렵고, 부패사건 통계의 경우 정부의 반부패 통제정도가 반영(부패행위의 적발 활동이 활발할수록 범죄·징계건수가 증가)되고, 부패사건의 발생시점과 적발시점 간 시차가 있어 현재의 청렴수준을 객관적인 부패 관련 통계만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부패수준의 측정을 위해 국내·외에서 설문조사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청렴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와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모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가 아니라, 최근 1년간 공공기관의 측정업무를 경험한 국민(민원인, 공직자)과 1년 이상 그 기관에서 근무한 소속 직원 등 직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종합적으로 설문조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측정업무를 경험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기관별 측정 대상업무를 선정하는 것도 기존 청렴도 측정 설문조사와 동일한 방식이다.

다만, 기존 청렴도 설문에 비해 청렴체감도는 외부·내부 대상 설문 구성 체계를 부패인식/부패경험 부문으로 체계화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외부·내부), 부패통제제도(내부) 관련 설문을 제외하면서 청렴·부패 수준 측정에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하는 등 모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했다. 또, 부패경험 항목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측정 항목과 반영 방식을 변경·보완하였다.

〈 2022년도 청렴체감도 구성 및 세부 항목(안) 〉

구 분	외부 업무 (외부 업무상대방 대상)	조직내부 운영 (내부 직원 대상)
부패 인식 (외부 : 6개, 내부 : 7개)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업무처리	• 법령·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 연고관계나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특혜 제공 - 업무수행상 위법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 인사업무의 기준·절차를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
	• 공직자의 권한남용 -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 행위 - 외부 업무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나 방법을 통한 사익 추구 -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소극행정)	• 공직자의 권한남용 - 직무·직위·직책 등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부당한 청탁·알선·요구·지시·거부 등 갑질 행위 - 직무관련 영리행위 또는 직무관련 정보나 직위를 이용한 사익추구 -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부패 경험 (각 2개 항목)	• 청렴의무 위반 -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청렴의무 위반 - 조직내부 운영과정에서의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경험률 -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빈도

※ 기존 내부청렴도 부패경험 항목(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등은 반부패 정책추진에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로 조사하여 기관에 세부 결과 제공

※ 정책 추진여건과 상황, 전문가·관계기관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존 청렴도 측정 설문지의 부패경험 항목은 외부 6개 항목, 내부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청렴도 결과에 반영되는 비중도 각 영역의 50% 이상을 차지해 부패경험 응답이 청렴도 측정 설문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 효과로 금품·향응·편의 관련 부패경험 등 부패경험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또, 부패경험 응답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어 전체 측정기관을 상대평가하는 방식(UCP 적용)을 사용한다. 이처럼 많은 항목과 높은 반영비중, 낮아지는 부패경험률 추세와 상대평가 방식의 적용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기관에 따라서 1~2건의 부패경험 응답이 부패경험 점수와 종합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있었다.

이에 그동안 점수와 항목으로 반영하던 부패경험 항목을 설문 감점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부패경험 항목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항목들로만 구성했다. 즉, 부패경험 항목은 외부·내부 모두 명확한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금품·향응·편의 관련 경험 여부와 빈도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2개 항목을 가중합산해 구성한 부패경험 점수는 부패인식 항목 결과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해 그동안 일부 과도하게 반영됐던 부패경험 항목의 영향력을 적정화한다.

참고로, 그동안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던 청렴도 설문 결과와 달리, 청렴 체감도는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된다. 이는 청렴노력도와의 통합 점수 산출 필요성 및 점수 가시성 제고,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점수체계(2012년부터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 체계로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적용한 결과다.

한편, 일반 공공기관과 비교해 특수성을 갖는 지방의회,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기관 유형은 그 특성을 반영한 특화 항목을 구성해 측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광역·기초의회는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23년부터 평가될 예정이다.

▣ 청렴노력도 평가

각급기관의 반부패 추진실적과 노력을 평가하는 기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종합청렴도 모형의 청렴노력도로 개편되었다. 청렴노력도 평가는 기관의 반부패 추진 노력을 유도하는 기존의 목적과 기능을 유지하되, 다소 복잡했던 지표 및 배점 체계를 대폭 단순화하여 기관에서 평가 모형과 지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구성을 기존 ‘계획-실행-성과-확산’에서 ‘추진체계와 실적’으로 단순·명확화하였다. 전체 지표 적용모형을 기준으로 추진체계는 총 4개 지표, 추진 실적은 총 8개 지표와 1개의 가점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총 지표 수는 14개 (시책 효과성 평가 포함)로 '21년 기준 19개에서 5개 지표가 줄어들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등 핵심적인 반부패 시책은 빠짐없이 포함시켰다.

청렴노력도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최종 산출된 기관별 노력도 점수는 청렴 체감도와 정해진 비율로 조정되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의 반영 비율이 60 : 40이라면 노력도의 만점 100점은 40점으로 환산된다.

이러한 통합 평가체계를 고려하여 청렴노력도 결과나 특정 지표가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가방식 표준화·객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21년 기준 지표별 배점이 최소 3점에서 최대 15점이었던 반면, '22년 적용되는 종합평가 모형에서는 지표의 내용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표별 최소 5점에서 최대 10점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지표별로 약 40%의 기본점수를 부여하였고, 정량평가는 3~5단계로 등급화하여 평가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평가지표 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책효과성 평가의 도입이다. 시책 효과성은 그간 반부패 추진실적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시책 추진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게 된다. 설문조사는 청렴 체감도 측정 시 함께 실시되며, 배점은 1개 지표 평균 수준이다. 내용은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필수적인 반부패 제도·시책 중심 5개 항목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의 통합평가 체계로 인하여 노력도 평가를 받는 기관수는 '22년 573개로 '21년 대상기관 273개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일부만 시책평가를 받던 기초자치단체 유형과 강소형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22년에는 개편 첫해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한 특화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특화모형은 전체 14개 지표 중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등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적이고 기관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8개 내외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다른 특성을 지닌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도 이 특화모형을 적용받게 된다. 특화모형의 평가는 전체 지표 적용기관과 동일한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관의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다시 비율에 맞게 조정·반영된다.

이러한 특화모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2년도 평가 진행 추이와 결과, 기관 의견과 전체지표 적용 필요성 등을 고루 감안하여 전체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22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체계 및 배점(안) 〉

구분	지표 및 평가요소(안)	배점(안)
① 청렴 정책 추진 체계 4개 지표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특화 •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반영, 청렴계약, 기관별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반부패 성과 대내외 홍보 등	10
	②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특화 • 기관장 청렴 의지, 전담(담당) 조직·인력·예산, 인센티브 체계 구축 등	10
	③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특화 • 운영지침 제정, 담당관 지정	5
	④ 반부패 법령·규정 정비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개정에 따른 자체 규정 정비(수요 발생시)	5
② 청렴 정책 추진 실적 8개 + 1개 가점 지표	⑤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특화 •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성과, 취약분야 개선 사례 등	10
	⑥ 부패방지 제도 구축 •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률 및 조치기한 준수율,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이행 및 자치법규·사규 개선	10
	⑦ 반부패·청렴 교육 실효성 제고 특화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행, 기관의 청렴 교육 이수현황 공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이수	10
	⑧ 외부참여 활성화 및 청렴문화 민간 확산 •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활동	7
	⑨ 반부패 법령·제도 이행력 제고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공공재정 부정청구 제재처분 기록·관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등 포함) 실태점검 및 조치, 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7
	⑩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 청렴포털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및 청렴활동, 신고·상담·적발 사례 및 지침 공개,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7
	⑪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특화 •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신고자 보호결정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 관련 협조도	7
	⑫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 • 각종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5
	⑬ 가점 특화 1. 멘토기관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2. 부패사건 자체적발 노력, 3. 적극행정 구현 노력, 4.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운영, 5.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운영 및 연계	각 1~2점 (최대 5점)
③ 시책 효과성 평가	⑭ 반부패 시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인식 설문 결과 특화 • 반부패 계획 수립·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청렴 교육, 이해충돌방지 제도 정착 노력,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7

※ 지표구성과 점수 체계는 잠정(안)이며, 여건·환경 변화 및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특화> 표시된 지표는 단계별 지표를 적용하는 기초자치단체 및 정원 300명 미만의 중소형 준정부기관, 국공립대학교, 공공의료기관의 평가지표에 해당함

▣ 부패실태 평가(종합 감점)

부패실태 평가는 기존 청렴도 측정에서 감점으로 반영(최대 청렴도 전체의 7% 내외)되던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이 확대 개편된 영역이다. 2021년과 같이 행정기관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평가 대상기관 구성원의 부패행위와 부패사건을 점수화한다. 점수화 방식은 1차적으로 전체 부패사건에 대한 정량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주요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 외부기관 적발률이 높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를 추가로 정량평가 점수에 반영해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점수화한 부패실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가중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반영된다.

부패실태의 1차 정량평가를 위한 산식은 각급 기관의 부패행위자의 직위, 총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 시기 등을 반영해 구성한다. 종합청렴도가 100점 만점 체계로 개편되고, 종합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실태의 반영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최종 정량감점의 산식에 적용되는 상수도 이에 맞춰 조정된다. 예를 들어 2021년의 정량산식과 유사한 산식이 2022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2021년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정량 산식에 적용된 최종 상수는 0.7이었는데, 100점 만점 체계에서 부패실태 감점이 최대 10점까지 적용되는 경우 정량 산식의 최종 상수는 10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에는 감점으로 적용되는 대상 사건도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2021년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상 확장된 부패유형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전형적인 공직부패 유형 외에 새로운 대상 사건 유형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3.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원칙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의 모든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정해진 인력·예산·기한 하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규모가 작거나 단순 집행기관으로 평가가 적절치 않은 공공기관도 존재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체계에서도 공공기관의 성격·규모·영향력, 측정·평가 가능성과 측정·평가의 효과성·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측정·평가 대상을 정해왔다.

2021년에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하면서 평가 대상기관 선정의 주요 방향도 함께 검토했다. 이를 반영해 2022년 3월 초에 2022년 평가 대상 기관(안)의 내용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이 각급 기관에 공유되었다. 2022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도 개편방안에서 매년 전수 평가 대상기관으로 검토했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개편방안의 내용대로 2022년에 전수 평가 대상이다. 이에 더해 개편방안에서 매년 평가 대상기관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대규모·주요 국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은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인 대규모 12개 국립대학과 청렴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할 필요가 있는 4개의 과학기술원 등 16개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매년 전수로 평가하는 기관유형 외에 매년 기본계획 상 기준에 따라 추가로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기관도 있다. 매년 평가 필요성을 고려해 가장 평가가 필요한 대상 기관 또는 기관유형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추가 대상을 보면, 우선,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의 정원규모, 전년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공공기관은 정원 500명 이상인 17개 기관과 전년도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4등급 이하였던 정원 500명 미만의 5개 기관이 추가로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2021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았던 8개 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부동산·교통·시설관리 관련 공사·공단 31개 기관, 그리고, 2021년에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였던 기초자치단체 산하 8개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으로, 2021년에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입학 정원 2,500명 미만의 17개 국공립 대학의 종합청렴도도 평가할 계획이다.

반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지방선거로 지방의회의 구성이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에 맞춰 지방현장의 청렴도 향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 교육지원청도 전수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교육지원청의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결과에 반영된다.

평가 대상기관은 기관의 성격, 매년 평가 여부, 관련 법령과 타 공공기관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해 기관유형을 분류하고, 기관유형별로 등급결과를 산정하게 된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시 등급 분류는 크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국공립대학 / 공공의료기관으로 나뉜다.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는 추가로 유형을 세분하여 나누게 된다.

2022년의 평가 대상기관(안)과 기관유형 분류 검토 기준 등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3월 초에 발표한 평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은 국민권익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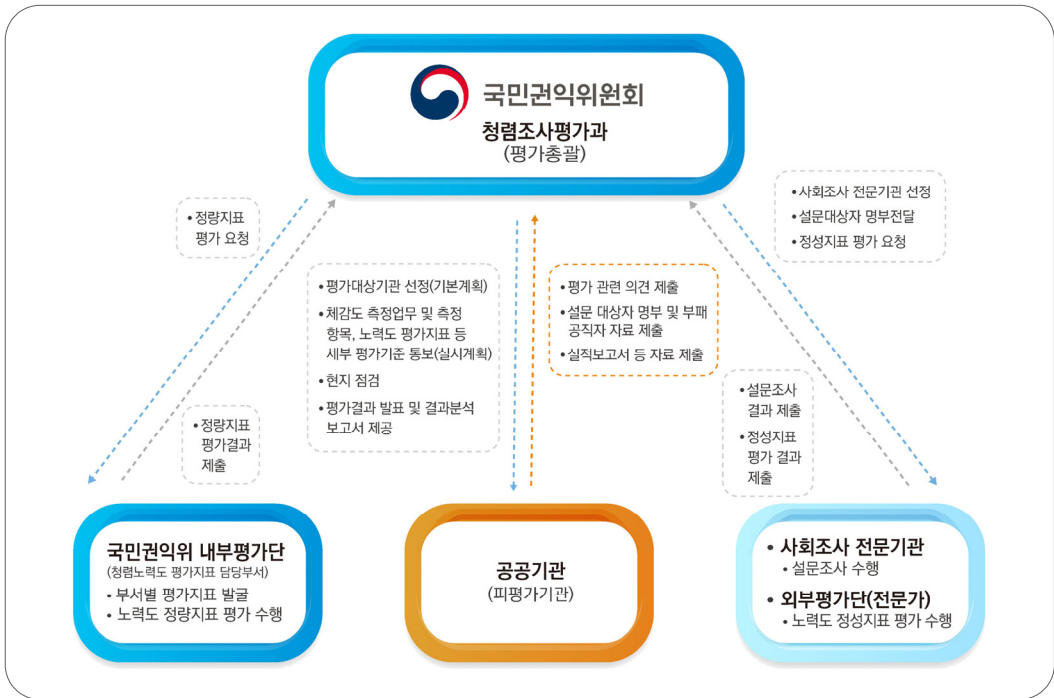
4.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절차

〈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절차 및 대응사항 〉

주요 일정	주요 내용	시기	기관 담당자 대응사항
기본계획 수립	평가 대상기관(안) 및 기본 방향 마련	2~3월	통보된 기본계획 확인 - 청렴업무 담당자 연락처 제출, 기관별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
의견수렴 및 실시계획 검토	평가모형 등 세부내용 검토, 워크숍·의견수렴 ※ 평가 용역 수행자 선정	3~4월	기관 담당자 워크숍 참석, 평가모형 및 체감도 측정업무 등 관련 의견 제출·협의
실시계획 수립	평가모형(항목·지표), 대상 기관 및 기관 유형, 체감도 측정업무 등 확정	5~6월	통보된 실시계획 확인 - 청렴도 평가 세부내용 및 제출자료 기준을 확인하고, 제출 자료 준비
평가 실시	평가 관련 자료 1차 제출	5~7월	(5~6월)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7월) 설문조사 대상 명부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 제출 - 자료 제출 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문 게시 ※ 제출 자료 보완 요청 시 대응
	설문조사 실시	8~11월	내부직원 설문조사 안내문 공고, 신뢰도 저해행위 예방·관리 철저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 실태) 평가	8~12월	부패사건 관련 확인·소명 등 대응 - 징계의결서 등 추가 요청자료 대응, 언론 보도 부패사건 사실관계 확인·소명, 전체 감점 대상사건 확인·소명 등 ※ 소명 등을 위해 심의회 참석 요청 가능
	현지점검	8~11월	현지점검 대상 선정 기관은 기관 준비사항 숙지·협조
	평가 자료 2차 제출 및 반부패 실적(노력도) 평가	11~12월	(11월 초) 실적보고서 등 평가자료 제출 (11월~12월중) 정량지표 평가 결과 관련 이의신청(신청 사항 있는 경우)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 분석 및 발표	'23.1~2월	기관별 보고서 송부 받을 기관 담당자 메일 주소 현행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 공개

※ 평가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은 국민권익위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에서의 기능과 역할 분담 〉



2022년 평가 대상기관(안)과 기본방향 수립(평가 기본계획)

2022년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안)과 기본적인 평가방향은 지난 3월 초에 각급 기관에 공유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3월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공문으로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해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청렴업무 담당자는 공유된 기본계획의 내용을 확인해 담당자 현황을 제출하고, 올해 평가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 평가 대상기관의 의견수렴 및 평가 세부사항 검토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의 세부사항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즉 앞의 내용 중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에 대한 내용은 2022년 평가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인 측정·평가 항목·지표, 기관별 청렴체감도 측정 대상업무, 부패실태 평가의 구체적 기준과 각급 기관의 제출자료 기준 등의 구체적 내용들이 실시계획에서 정해진다. 기본계획이 통보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평가 대상 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검토와 함께 설문조사와 평가 지원을 위한 용역 수행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평가 대상기관의 담당자는 이 시기에 기관별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구체적인 측정·평가 항목·지표, 자료제출 기준·서식 등 평가 전반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작성해 국민권익 위원회로 제출한다. 또,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담당자 워크숍과 필요에 따라 온라인 의견수렴, 간담회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과 메일 등을 수시로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대상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은 공문·서면, 대면·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할 수 있다.

▣ 평가 세부사항 및 기관 제출 자료 범위·기준 확정(평가 실시계획)

종합청렴도 평가모형(항목·지표, 평가 영역별 가중치 등), 기관별 자료 제출 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평가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각급 기관에 공유되면 기관 담당자는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기관의 제출자료와 준비사항 등을 숙지해 본격적인 평가 진행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

본격적인 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자료 제출은 크게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실시계획 공유 직후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청렴노력도 평가를 위한 각급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7월에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의 시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 명부(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기준)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 자료를 제출한다. 설문조사 대상 명부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관련 자료는 실시계획의 세부 제출기준을 명확히 확인·숙지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대상자 명부 보완, 부패사건 발생 현황 추가 자료 등 자료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또, 설문 대상자 명부 등을 제출한 직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3자 정보제공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마지막 자료 제출은 11월 초에 이루어진다. 이때는 청렴노력도 평가를 위한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자료는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시스템(청렴포털)을 통해 제출하게 된다.

8월부터는 본격적인 설문조사가 시작된다.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월부터는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없고, 설문조사에 대한 호의적 응답 유도와 관리 행위 등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므로 평가 대상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내부직원의 설문조사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안내문을 공문으로 공유하는데, 각급 기관은 안내문 문구의 변동 없이 기관 내부망 등에 게시해야 한다.

설문조사와 함께 각급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점수화해 감점을 산정하는 부패실태 평가도 이루어진다. 기관에서 제출한 징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언론 보도자료, 감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언론 보도의 경우 혐의 여부와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1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기관에 확인·소명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자체적발과 외부기관 적발의 여부에 따라 반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은 해당기관의 사건별 자체적발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 보고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 자체적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단계를 거쳐 기관별 감점 적용 대상 전체 부패사건이 결정되면 해당 기관에 확인·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관의 확인·소명을 거쳐 감점 대상 사건이 최종 확정되면, 1차로 정량

평가 후 주요 사건이 발생한 기관이나 외부기관 적발 비율이 높은 기관은 전문가 심의회를 통한 정성평가까지 거쳐 최종 감점규모가 결정된다.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들은 신뢰도 저해행위 점검 등을 위해 각급 기관에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현지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공문과 메일로 안내된 준비 사항을 숙지하고, 현장에서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가 적발된 경우 전문가 심의회 등을 통해 감점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실시계획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해 공유할 예정이다. 현지점검을 통한 제재조치를 위해 경우에 따라 필요시에는 전문가 심의회 등에 기관 담당자가 참석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현지점검 일정은 청렴체감도·노력도 등 각 영역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기관에서 제출한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노력도의 정성·정량 평가가 진행된다.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므로, 기관 담당자는 이 기간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사항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설문조사와 부패실태 평가, 청렴노력도 지표 평가가 완료되면 모든 평가 결과를 합산해 종합청렴도 결과를 산정한다.

▣ 평가 결과 발표·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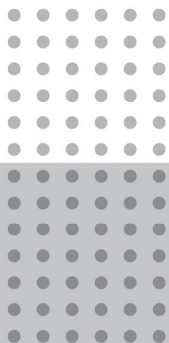
종합청렴도 결과는 대국민 공개되며, 각급 기관은 기관별 세부 평가결과가 담긴 기관별 보고서를 수령한다. 따라서, 기관 담당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평가 결과 발표 전 기관별 보고서를 송부 받을 기관 담당자 이메일 주소 등을 현행화해야 한다. 또, 결과가 발표되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각급 기관은 기관별 종합청렴도 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결과 발표일 14일 이내에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5.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공개·활용

각급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한다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종합청렴도 결과와 각급 기관별 세부 결과는 국민 권익위원회와 각급기관의 반부패 정책 수립·추진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그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청렴도 세부 결과를 활용해 청렴 컨설팅·교육, 행동강령 점검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각급 기관은 기관별 세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단위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별 우수 사례를 공유해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한다. 종합청렴도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록 1 •

2022년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안내서



부록 1 | 2022년 공공기관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

주요 사항

- ▲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청렴도 측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측정 여부 및 방식 등은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 자체청렴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경우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본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붙임1 서식)을, 조사 실시 후에는 실시 결과 개요를 국민권익위에 공문으로 제출
- ▲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표본 관리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등 제재조치 가능
- ▲ 국민권익위 제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목 적

- 각급 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청렴도 측정이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거나 응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적용 대상

- 자체청렴도란 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관의 자체조사를 의미함
 -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용 설문(부패에 대한 인식·경험과 관련되거나 반부패 시책 추진의 실효성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된 경우 자체청렴도에 해당하므로 설문 시기 및 조사표본 규모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가이드라인 적용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 사례

① 자체청렴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상이 국민권익위의 청렴체감도 측정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②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만족도 조사(해피콜)에 해당할 경우 연중 실시 가능

▶ 만족도 조사(해피콜) 해당 여부 판단 기준

① 청렴수준 및 부패취약분야 진단용 설문(부패인식 또는 부패경험 관련 항목) 미포함

② 민원처리 당월 또는 익월 중 실시

③ 고위공직자의 부패위험성을 진단하는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은 기관의 자체 청렴도 측정과는 별개로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

- 설문조사는 청렴도 측정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과 12월 중 완료
-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후 진단 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통보(통보 내용은 진단 결과 개요이며, 개인별 평가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④ 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등에게 별도의 부패 인식·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없이 서면·모바일 등으로 부패신고시스템 및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는 것은 연중 가능

- 다만, 부패경험 등 설문을 1개 이상 포함하는 경우 자체청렴도에 해당하므로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진행

※ 부패경험 1개 문항을 익명조사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경우 (2019년까지는 가이드라인 적용 예외로 인정되었던 사항)에도 자체 청렴도에 해당(가이드라인 적용)함에 유의

⑤ 2020년부터 공통 측정모형(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정책고객평가가 참고지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책고객평가 대상이었던 전문가 등에 대한 청렴수준 진단은 연중 가능

※ 2022년부터는 정책고객평가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 (설문대상)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민원 야기 최소화를 위해 민원인, 내부직원 등 대상 설문조사는 원칙적으로 기관별 자체 조사대상의 50% 이하만 조사

※ 전체 대상의 50% 이하에 대해서만 **설문 시도(설문 성공 수가 아님에 유의)**

- (설문시기) 상·하반기 각 1회 이내의 조사만 가능하며,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기간(7월~11월)을 제외한 1~6월, 12월 중 설문 완료

- (설문내용) 국민권익위 설문 문항과 유사·동일한 설문은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이 되므로 유사·동일한 설문 구성은 지양하고, 기관의 부패수준을 실질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권고

☞ 지양 사례) 자체청렴도 설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민권익위의 전년도 설문 등 기존 설문의 내용과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구성 : 설문내용을 그대로 적용(일부 단어만 수정하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포함)하고, 선택지도 유사하게 구성(리커트 척도 등)하는 경우 등

☞ 권고 사례) 부패취약분야 및 취약 원인,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기관의 청렴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

- (익명성보장) 설문응답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익명성 보장을 철저히 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표본 관리행위 등 금지

▣ 조사 실시 관련 제출 사항

- (실시계획) 자체청렴도 조사 실시 전 붙임 1의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수신처 :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 실시 계획 및 설문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별도의 사전 협의·검토

절차 없이 실시 계획 제출 이후 조사 실시 가능하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담당자는 계획 수립 시부터 주의 필요

○ (결과제출) 조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 결과보고 별도 양식은 없으며, 측정 실시 결과 개요를 자유 양식으로 통보

- 조사 전 제출한 실시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 결과 개요만 제출(기관별 구체적인 청렴수준 측정결과는 제출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재

○ 전년도에 제출한 자체청렴도 실시 계획과 동일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도 매년 자체청렴도 실시 계획과 결과 개요를 제출해야 함

○ 제보·현지 점검 등을 통해 아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종합청렴도에서 감점 가능

- 기관이 제출한 실시 계획에 가이드라인 위반사항 포함, 실시계획과 다르게 조사 실시(계획보다 지나치게 많은 대상을 조사하여 가이드라인 상 설문대상 기준 위반 등), 제한기간(7~11월) 중 설문 실시, 익명성 미보호 등 측정 가이드라인 위반

- 측정 결과 (응답)표본 관리,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명부 제출 시 특정 표본 누락 등 청렴도 측정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국민권익위)에 구체적인 제재조치 기준 마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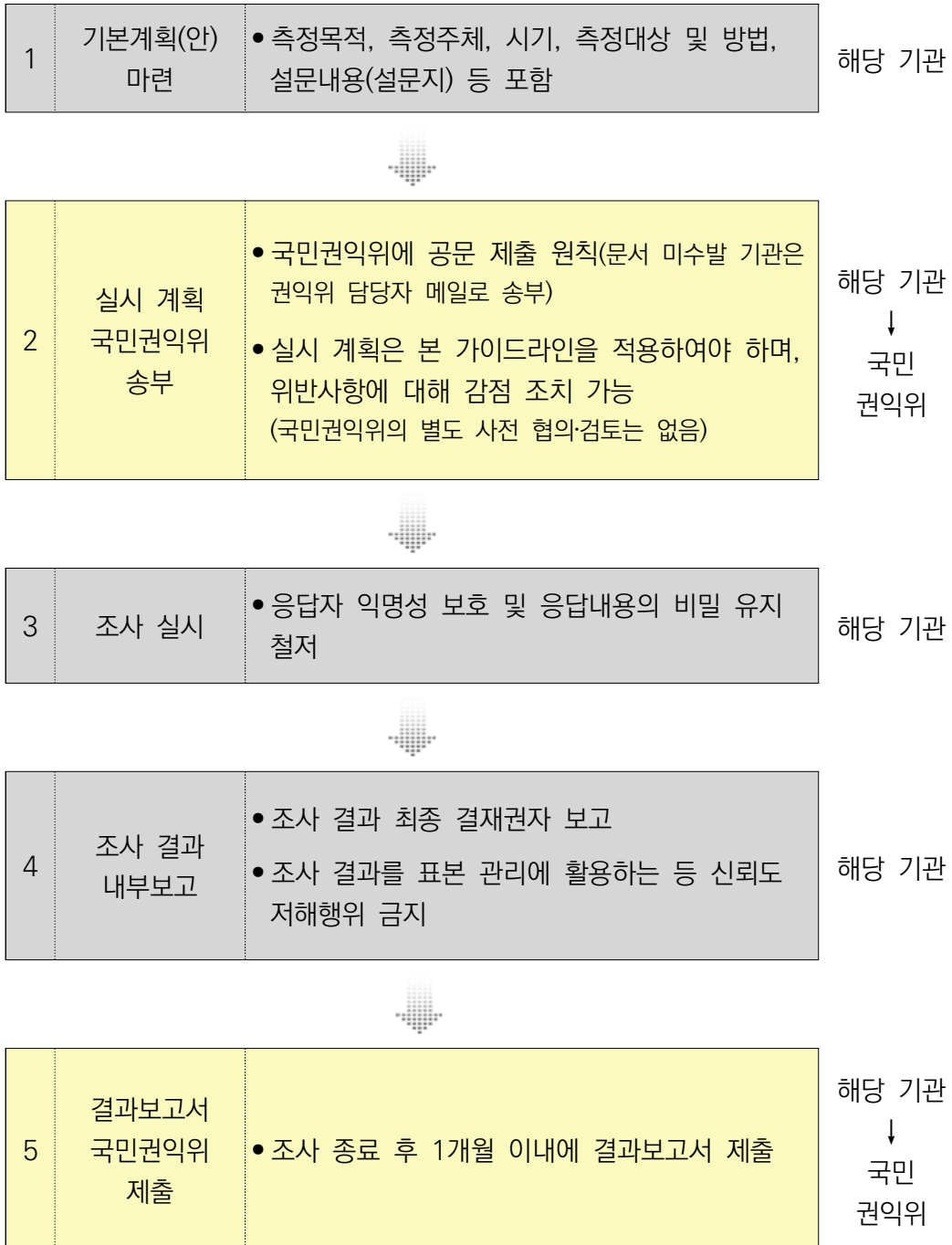
※ 2022년 현지점검은 하반기 실시 예정(여건·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가이드라인 위반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상시 현지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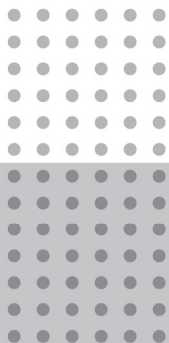
붙임 1 자체청렴도 실시 계획 제출 서식

기관명			
주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 분	세부내용	
측정 분야	(예) 청렴체감도(외부 업무과정), 청렴체감도(내부 조직운영 전반), 청렴노력도(반부패 시책 효과성(실효성))	
설문 시기	시작일	(예) 2022.5.1.
	종료일	(예) 2022.5.31.
설문 규모	전체	(예) 22.1.1.~22.4.30. 중 공사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 2,135명 22.4.30.현재 재직 중인 소속 직원 5,232명
	설문 대상	(예) 공사계약 체결 상대방 500명 소속 직원 500명
설문 방법	(예) 전화조사, 이메일·모바일 등 온라인 조사	
수행 주체	(예) 사회조사업체(OO리서치), 모니터링요원(OO명)	
익명성 보호조치	(예) 리서치업체로부터 응답자 식별 불가능한 자료만 수령 모니터링내용 정리 서식에 응답자 성명, 업체명, 전화번호 미기록	
결과 활용	(예) 정책 수립 참고용, 부서별 성과평가 반영	

붙임 2 자체청렴도 측정 추진 절차





부록 2 •

자주 묻는 질문



부록 2 | 자주 묻는 질문

■ 종합청렴도 평가 일반

1. 종합청렴도 평가는 왜 하나요?
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종합청렴도 평가의 각 영역별 기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청렴도 측정/부패 방지 시책평가와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4. 같은 A부 산하기관인데 왜 @기관은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나요?
5.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도 청렴도 평가를 하나요?

■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청렴체감도〉

1. 청렴체감도 측정은 왜 설문조사로 진행하나요?
2.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나요?
3. 청렴체감도 측정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4. 일반 국민이 아닌 외부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청렴체감도 측정 대상업무인가요?
6. 측정대상업무를 바꾸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어 민원인과 대면하지 않고, 부패개연성도 없는 것 같은데, 측정 대상업무로 선정될 수 있나요?
8. 우리 기관의 측정 대상업무는 업무성격상 안 좋은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 불리해요.
9. 측정대상자 명부는 개인정보인데 체감도 조사에 사용해도 되나요?
10. 측정대상자 명부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1. 청렴체감도 점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총 몇 점 만점인가요?
12. 측정업무별 점수를 평균하면 외부 업무과정의 체감도 점수가 나오나요?
13. 부패경험 항목이 감점으로 반영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14. 부패경험 항목이 감점으로 반영된다면 최대 얼마나 감점되나요?

〈청렴노력도〉

1. 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청렴노력도로 개편됐는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2. 단계별 또는 특화 지표가 적용되는 기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원 규모가 작으면 무조건 특화 지표가 적용되는 건가요?
3. 청렴노력도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총 몇 점 만점인가요? 가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4. 실적보고서와 증빙 등 평가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5. 청렴노력도 세부지표는 언제 확정되어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
6.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년 같은 것인가요?
7.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8. 청렴노력도 지표 중 정성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9. 청렴노력도 지표 중 정량평가는 어떤 절차로 평가하게 되나요?

〈부패실태〉

1. 부패실태를 종합 감점으로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감점 대상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로 한정되나요?
3. 언론 보도된 부패사건은 모두 감점으로 반영되나요?
4.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부패사건도 모두 감점 대상인가요?
5. 감점 규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6. 감점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이 전문가 정성평가 대상인가요?

■ 평가 절차

1.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각급 기관별 청렴 업무 담당자가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고, 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3. 평가 과정에서 각급 기관의 의견수렴이나 확인·소명 절차가 있나요?
4. 의견수렴이나 확인·소명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현지점검

1. 신뢰도 저해행위가 무엇인가요?
2. 감사부서에서는 설문조사 시 호의적 응답 유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반영되었어요.

3.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설문조사)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4.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설문조사 기간 중에 자체청렴도 측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청렴도 평가 관련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6.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점검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활용

1. 평가결과인 점수와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 청렴도 점수는 높게 나와야 좋은 것인가요? 등급 기준은 어떤가요?
3. 청렴도 결과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서 금품·향응 등에 대한 부패경험 응답이 있다면, 받은 공무원과 답변한 응답자를 알려주세요.
4. 청렴도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합청렴도 평가 일반

Q1 종합청렴도 평가는 왜 하나요?

→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처벌 위주의 반부패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취약 분야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추진하며,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에 대한 진단과 반부패 개선 노력 추진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Q2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개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02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 평가는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 촉진과 이를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평가체계 개편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변화된 부패 환경(다양해진 공직자의 부패유형과 반부패 관련 법령·제도 등)과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개편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과 평가기관과의 소통을 거쳐 그동안 평가의 연속성 때문에 반영이 어려웠던 기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고, 국민들과 각급 기관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청렴수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Q3 종합청렴도 평가의 각 영역별 기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 청렴도 측정/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비교해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 기본적으로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기준 기간과 동일합니다.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의 기준(지난 1년간) 기간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로 기존 청렴도 설문조사와 동일합니다.

청렴노력도의 실적 기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로, 11월 초에 1년간의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부패실태의 공직자 징계현황은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이나, 주요 사건 등은 당해 연도 평가 종료 전까지 징계가 없더라도 감사(감사상 징계요구), 수사(기소 이상), 재판(유죄 판결)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경우 부패실태 감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같은 A부 산하기관인데 왜 ㉔기관은 청렴도 평가를 하지 않나요?

→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공공기관을 매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기관의 업무·성격, 규모·영향력, 평가 가능성·효과성·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상기관을 선정합니다. 특히, 평가 대상인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는 그 수가 많고, 규모와 성격이 다양해 매년 평가 기본계획에서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기관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부처 산하기관이더라도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 따라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및 2022년도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기획재정부) 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전수가 평가 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Q5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도 청렴도 평가를 하나요?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면 청렴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라목)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청렴체감도

Q1 청렴체감도 측정은 왜 설문조사로 진행하나요?

→ 공공기관의 부패수준 진단과 반부패 전략의 수립을 위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평가와 분석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내부는 소속직원, 외부인 중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가 해당 기관의 ‘현재 청렴 수준’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는바, 응답자들로부터 해당기관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응답자의 신분의 ‘익명성’과 내용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응답자의 신분보장과 응답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설문조사 방식이 적합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설문은 부패수준 측정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Q2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나요?

→ 청렴체감도 설문조사는 20만 명이 넘는 평가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조사는 전문 조사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 조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조사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Q3 청렴체감도 측정 설문조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관별 측정업무를 지난 1년간 경험한 업무상대방(대민업무인 경우는 민원인, 대기관 업무인 경우는 공직자)을 대상으로 외부 업무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운영과정에서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설문조사합니다.

Q2 일반 국민이 아닌 업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의 보이지 않는 청렴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언론보도 등 제한적 정보에 기초한 기관 이미지 위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청렴수준 측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민원인·공직자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Q5 그 기관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청렴체감도 측정 대상업무인가요?

- 체감도 측정 대상업무는 각급 기관의 업무 중 대표성이 있거나 부패개연성이 있는 중요한 대민·대기관 업무로 설문조사가 가능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단순·반복적 업무로 부패개연성이 없거나, 설문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건수가 적은 경우(기관의 주요 업무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 경우 제외)에는 측정 대상업무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Q6 측정 대상업무를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조직 변경, 업무 신설,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매년 기관별 측정 대상업무를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통상 기본계획이 각급 기관에 전달되면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측정업무에 대한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측정 대상업무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해 확정합니다.

따라서, 검토기간 중 각급 기관이 측정 대상업무의 변경 필요성, 관련 통계 등 근거자료, 대체 측정 업무 제안 등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면 측정 대상업무 검토 시 함께 검토되며, 업무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반영 될 수 있습니다.

Q7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어 민원인과 대면하지 않고, 부패개연성도 없는 것 같은데, 측정 대상업무로 선정될 수 있나요?

→ 부패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속 등 침익적 업무와 인·허가 등 국민에게 특정한 권한을 주는 업무는 물론 이고, 해당 업무가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패개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업무처리절차 전 과정이 전자입찰시스템 등을 통해 추진돼 민원인과의 대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전자시스템 진행 전·후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 대상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8 우리 기관의 측정 대상업무는 업무 성격상 안 좋은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다른 기관에 비해 불리해요.

→ 그동안의 측정 결과 등을 보면,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인의 점수나 규제·단속 성격이 강한 업무의 결과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체감청렴도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와는 달리 업무 과정에서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므로 수혜·지원 성격의 업무라도 업무과정에서 부패행위(예를 들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나타나 점수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 결과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렴체감도는 외·내부 업무과정에서의 청렴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답이 잘 나올 것 같은 업무만 측정한다면 측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Q9 측정대상자 명부는 개인정보인데, 체감도 조사에 사용해도 되나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와 제27조의 2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상자 명부를 각급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청렴도 측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출된 측정대상자 명부, 응답자의 응답내용과 개인정보 등은 모두 파기됩니다.

청렴도 측정대상자 명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도 각별한 보안유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측정대상자 명부 작성 및 제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개인정보이용 관련 법적 근거 및 필요조치**○ 기관보유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의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및 제27조의 2, 제29조제1항제1호
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를 위한 자료 등 제출요구권 규정에 의해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민원인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음

○ 기관의 필요조치(「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의해 제3자(위원회)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함

※ 측정기간 중 민원인 질의 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와 기관의 조치 사항 등의 안내와 함께, 해당 정보는 청렴도 측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한 보안 조치 하에 관리되고, 조사 종료 직후 폐기됨을 안내

Q10 측정대상자 명부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암호가 설정된 엑셀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평가 실시계획 통보 시 별첨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안내 자료를 확인·숙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11 청렴체감도 점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총 몇 점 만점인가요?

- 청렴체감도 점수는 외부 업무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점수 결과와 조직 내부 운영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점수 결과에 각 부문별 가중치를 곱해 가중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구합니다.
외부·내부 가중치는 전문가 등의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해 산출하게 됩니다.

Q12 측정업무별 점수를 평균하면 외부 업무과정의 체감도 점수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이는 부패인식 항목(개별평가형 문항)과 부패경험 항목(기관 총합형 문항)의 점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패인식 항목은 업무별 청렴도 점수를 평균해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지만, 부패경험 항목은 기관 전체의 부패경험 여부와 빈도 등의 값을 활용해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업무별 점수의 평균과 무관한 값이 산출됩니다.

Q13 부패경험 항목이 감점으로 반영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 기존 청렴도 설문조사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 항목별로 각각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화했습니다.

개편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서는 우선, 외부·내부 각 부문별로 부패인식 항목 점수를 합산(항목별 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가중합산)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부패인식 점수를 산정하고, 여기에서 각 부문별 부패경험 항목을 합산해 산출한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청렴도 설문조사에서 기관별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수화하는 부패경험 항목이 각 부문별로 50% 이상 비중으로 반영되어 기관에 따라서는 1~2건의 부패경험 응답이 청렴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감점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14 부패경험 항목이 감점으로 반영된다면 최대 얼마나 감점되나요?

→ 부패경험 항목을 감점 반영 방식으로 변경한 취지를 고려해 부패경험 항목 결과가 변별력을 가지면서도 부패경험 응답 1~2건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감점 범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2022년은 반영 방식이 변경되는 첫 해로, 작년 평가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을 추가로 실시해 구체적인 감점 범위를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렴노력도

Q1 기존의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청렴노력도로 개편됐는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앞서도 강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청렴노력도가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관 입장에서는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구성 측면에서는 기존 ‘계획-실행-성과확산’ 체계를 ‘추진체계-추진실적’으로 단순·명확화하여 직관성과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실질적 시책 추진 효과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책효과성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시책효과성 평가는 주요 반부패 시책이 각급 기관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각급 기관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묻고 점수화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Q2 단계별 또는 특화 지표가 적용되는 기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원 규모가 작으면 무조건 특화 지표가 적용되는 건가요?

→ 정원규모가 작다고 반드시 특화지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평가 체계 통합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됨에 따라 청렴노력도 평가(기존 시책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 약 2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기관 유형에서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소규모 기관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기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일부 공직유관단체에 반부패 추진 계획 수립·이행을 포함,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로 구성된 특화모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기관유형과 성격이 다소 상이한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유형도 별도의 청렴노력도 지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화모형이 영구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지표를 점차 확대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기관이 전체 지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Q3 청렴노력도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총 몇 점 만점인가요? 가점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 청렴노력도는 총점 전체 지표의 총점은 100점 만점입니다. 또한 지표별로 점수가 각각 부여되어 있으며 획득한 점수의 총합이 기관의 점수가 됩니다. 이 점수는 청렴체감도와 노력도 반영비율에 따라 변환·합산되어 종합청렴도 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렴체감도와 노력도가 6:4 비율로 반영되면 100점은 40점으로 변환되어 합산되게 됩니다.

다만 특화모형의 경우, 노력도 평가의 모든 지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지표 전체의 총점이 100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화모형은 각 기관이 획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100점으로 환산하여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청렴노력도 평가에서는 가점지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점은 지표별로 이행 여부나 실적에 따라 최대 5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점을 포함한 기관의 총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표별 배점은 시책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하되, 하나의 지표가 지나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Q4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 등 평가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매년 5월~6월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 배포 시 실적 제출 일정과 서식, 증빙자료 등을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평가 관련 실적 자료는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자료는 공문으로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시기에 따라 공문 등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5 청렴노력도 세부지표는 언제 확정되어 기관에서 알 수 있나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6월 배포되는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에 확정지표와 제출서식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Q6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매년 동일한가요?

→ 청렴노력도 평가지표는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 및 정책, 국정과제, 주요 부패현안, 반부패 제도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하고 각급 기관, 학계, 반부패 전문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됩니다.

Q7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 먼저 각급기관에서 자료조작, 허위자료 제출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 조정 등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신뢰성,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에서는 매년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표 담당부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방문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8 청렴노력도 지표 중 정성지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청렴노력도에는 연간 체계적인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과 이행, 기관장·고위직 의지와 노력 등 핵심적인 정성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 평가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매년 반부패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평가기준이나 요소는 문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 평가 특성상 정량지표와 같은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제시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 청렴노력도 지표 중 정량지표는 어떤 절차로 평가하게 되나요?

→ 정량지표는 제출된 추진실적과 증빙자료를 통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매년 11월경 실적이 제출되면 1차 평가 후 이의제기와 검토를 거쳐 최종점수가 확정되어 청렴노력도 평가 총점에 합산됩니다.

부패실태**Q1** 부패실태를 종합 감점으로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패실태를 청렴체감도·노력도와 같이 별도 영역으로 점수화하려면 충분한 통계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이 전혀 없는 기관(별도 영역화할 경우 영역 점수 만점을 달성하는 기관)이 70~80% 수준에 달해 기관별 변별력에 한계가 있고, 1~2개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이 평가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평가제도 개편 과정에서 기존 평가 결과 등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별도 영역화 방식이 아닌 감점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현황은 청렴체감도 뿐 아니라 자체적발 노력 등 청렴 노력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청렴체감도·노력도를 가중 합산한 결과에서 종합 감점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Q2 감점 대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로 한정되나요?

- 부패실태 감점 대상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뿐 아니라, 청탁 금지법·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 상 부패사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 직무상 성 비위 사건(2021년의 경우 고위직에 한정) 등으로 부패행위에 비해 범위가 더 넓습니다.

2022년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상 확장된 부패유형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Q3 언론보도된 부패사건은 모두 감점으로 반영되나요?

- 아닙니다. 부패사건 발생에 따른 감점의 경우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감사·수사·재판 과정에서 부패 등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 제기, 징계처분 없이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등은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된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혐의 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해당기관의 확인·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4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부패사건도 모두 감점 대상인가요?

- 정확한 부패실태 평가를 위해서는 자체 적발한 부패사건도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나, 자체적발 사건이 반영될 경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인 각급 기관의 자체감사 등 자정활동 강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1년 청렴도 부패실태 평가시 자체적발 사건은 감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Q5 감점 규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기관이 제출한 부패사건 등 관련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종합해 기관의 확인·소명 과정을 거쳐 확정된 감점 대상 사건에 대해 1차로 부패행위자 직위, 부패금액, 사건 발생시점, 기관정원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정량 평가하고, 주요 사건이 발생한 기관 등은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정성 평가한 결과까지 반영해 최종 감점규모를 산정합니다.

Q6 감점 대상이 되는 모든 사건이 전문가 정성평가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전문가 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기관(사건)은 고위직 연루 또는 구성원 다수 가담으로 추가적 감점이 필요하거나,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의를 일으킨 기관, 외부기관 적발 비율이 높은 기관 등에 한해 정량평가 결과에 추가로 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해 감점을 산정합니다. 이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절차**Q1** 종합청렴도 평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종합청렴도 평가는 2~3월에 기본계획을 통해 그 해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 기본방향을 정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평가 모형(항목·지표, 영역별 가중치 등)과 세부 평가기준, 기관 제출자료 기준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각급 기관은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8월 이후에는 설문조사, 부패사건 발생현황 검토·평가, 반부패 추진 실적 평가 등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12월에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를 분석·정리해 다음해 1~2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급 기관에 세부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기관은 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평가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안내사항을 숙지·확인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각급 기관별 청렴업무 담당자가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이고, 그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계획이 통보되면 각급 기관 담당자는 기본계획의 협조사항에 따라 기관별 청렴업무 담당자를 제출하고, 평가 기본방향 및 제도 운영 세부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합니다. 평가를 위한 자료는 크게 총 3회 제출합니다. 우선, 청렴노력도 평가를 위한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실시계획 통보 후 실시계획에 명시된

기한 내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7월에는 설문조사를 위한 대상자 명부와 부패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초에는 청렴노력도 지표 평가를 위한 1년간의 반부패 추진실적 보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Q3 평가 과정에서 각급 기관의 의견수렴이나 확인·소명 절차가 있나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한 평가 전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소명 절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실시계획 수립 전까지 청렴체감도 측정업무, 청렴노력도 평가지표 및 제도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방식과 수단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다음으로 하반기에는 부패실태 감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확인·소명 절차와 청렴노력도 정량지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합니다.

Q4 의견수렴이나 확인·소명 절차가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각급 기관이 공문(서면), 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본계획에 안내된 기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합니다.

하반기의 부패실태 감점에 대한 확인·소명 절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문 등을 통해 확인·소명 절차와 방식을 안내하고, 확인·소명이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니, 해당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확인·소명하면 됩니다.

청렴노력도 정량 평가지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정량지표에 대한 1차 평가 이후 이루어집니다. 정량지표에 대한 1차 평가 결과는 청렴 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일정기간 동안 이의제기 및 검토기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급기관에서는 기관의 의견을 청렴포털을 통해 제출하게 된다. 또한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거나 요청받은 추가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는 개별 문의하거나 기관별 최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저해행위 및 현지점검

Q1 신뢰도 저해행위가 무엇인가요?

-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의 조작·훼손·허위 제출 및 중대한 누락, 설문조사 시 호의적 응답 유도(교육·회의, 메시지 전달 등), 자체청렴도 설문조사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등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제재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Q2 감사부서에서는 설문조사 시 호의적 응답 유도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이 반영되었어요.

- 감사부서에서 외부 민원인 또는 내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에 호의적으로 응답하라고 언급·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뢰도 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대상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일선 부서나 사업소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호의적 응답 유도행위를 하거나, 감사부서 외의 부서장 등이 직원들을 상대로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Q3 기관별 자체청렴도 측정(설문조사)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보다 구체적인 기관의 부패취약분야 파악을 위해 기관별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실시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의 설문조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설문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사 표본 오염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평가 기본계획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기관은 지난 3월 초 각급 기관에 배포된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안내서의 부록 2 참조)을 참고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1월~6월 중 또는 12월에만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 자체청렴도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상의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뢰도 저해행위로 감점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급 기관 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을 확인·숙지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4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설문조사 기간 중에 자체청렴도 측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설문조사 대상자가 단기간에 비슷한 내용의 설문을 두 번 이상 받으면 두 번째 이후의 답변은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설문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더 부정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기간 중에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자체청렴도 설문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5 청렴도 평가 관련 현지점검 대상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매년 평가 대상기관 중 일부를 기관유형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기관에는 각급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지역사무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신뢰도 저해행위가 있었던 기관이나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관, 제출 자료가 부실한 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6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점검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현지점검 시 신뢰도 저해행위가 적발되면 사전에 공지된 제재 기준(통상 평가 실시계획에 포함)에 따라 제재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출 명부·자료 보완(현지 시정) 요구 및 주의 촉구,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감점, 등급하향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활용**Q1** 평가결과인 점수와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각 100점 만점으로 산정한 후 부문별 가중치에 따라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부패사건 발생현황)와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한 감점을 종합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산정합니다. 기관별 등급은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이 속한 기관 유형별로 상대평가(기본적으로 기관유형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해 등급구간을 산정하고, 그 등급구간을 적용하여 기관별 청렴도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됨)를 실시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등급제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Q2 청렴도 점수는 높게 나와야 좋은 것인가요? 등급 기준은 어떤가요?

- 종합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산정되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종합 청렴도가 높아 청렴하다는 의미입니다. 등급기준은 5등급제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청렴도가 높아 청렴하다는 의미입니다.

Q3 청렴도 결과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예를 들어,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에서 금품·향응 등에 대한 부패경험 응답이 있다면, 받은 공무원과 답변한 응답자를 알려주세요.

→ 부패경험 응답의 ‘받은 공무원’이나 ‘답변한 응답자’ 등과 같이 응답자의 식별·색출 또는 식별·색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과정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료입니다.

설사 해당 정보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청렴도 조사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반해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응답부담과 응답내용의 민감성 등으로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익명성과 응답내용의 비밀보호가 보다 철저히 요구되는 청렴도 설문조사의 성격상 해당 자료의 생산·제공은 제도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기관은 종합청렴도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부패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감사 등 반부패·자정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부패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청렴도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각 기관마다 업무특성, 조직 환경 등이 상이하므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일률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청렴도가 우수한 기관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기관장의 의지가 높고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을 보이며, 대민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부패 개연성을 낮추고, 조직내부 인사예산 분야의 합리성을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해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문화적·행태적 개선 노력이 장기적으로 청렴도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본 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제작한 것으로,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책자는 무단 복사·복제할 수 없으며, 수록된 내용 중 의문점이 있으면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 청렴조사평가과
- 발 행 일 | 2022년 4월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동